



제 7286 호

# 경기도보

발행일 2023년 7월 3일

발행 경기도

도보는 공문으로서의  
효력이 있습니다.

차 례

**규 칙**

○경기도규칙제4060호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..... 3

**입법예고**

○경기도입법예고제2023-43호 경기도어린이안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 ..... 16  
 ○경기도입법예고제2023-44호 경기도पाल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.. 21  
 ○경기도입법예고제2023-45호 경기도도시재생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..... 27

**고 시**

○경기도고시제2023-1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(광주역세권청년혁신타운) ..... 30  
 ○경기도고시제2023-185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..... 31  
 ○경기도고시제2023-186호 평택시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폐지인가고시 ..... 32  
 ○경기도고시제2023-187호 양평군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(변경)인가고시 ..... 33  
 ○경기도고시제2023-188호 화성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..... 35  
 ○경기도고시제2023-189호 위례신도시상생협력행정협의회규약개정고시 ..... 41  
 ○경기도고시제2023-191호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(변경)고시 ..... 45  
 ○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3-526호 202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  
 고시 ..... 128

**공 고**

○경기도공고제2023-1493호 연천BIX(은통일반산업단지)준공인가공고 ..... 130  
 ○경기도공고제2023-1507호 운행제한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..... 131

**시군행정**

○안산시공고제2023-1578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13호선외1호선)사업실시계획(변경)열람공고 132  
 ○시흥시고시제2023-165호 시흥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송운공원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137  
 ○시흥시공고제2023-1933호 시흥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배곧한울공원)결정(변경)(안)공람·  
 공고 ..... 139  
 ○광주시고시제2023-465호 광주시중앙공원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개설공사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 
 (경미한변경),사업시행자(변경)지정및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..... 141  
 ○광주시고시제2023-466호 시청사진입도로(시도29호선)확포장공사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... 145  
 ○이천시고시제2023-282호 이천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:이천시북부권체육공원)사업실시계획(변경)  
 인가정정고시 ..... 154

- 안성시고시제2023-206호 원곡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30호선)]결정(변경)및지형  
도면고시 ..... 157
- 안성시공고제2023-1909호 금광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1호선)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 
열람공고 ..... 158
- 포천시고시제2023-310호 도시계획시설(유통및공급시설:전기공급설비)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
인가고시 ..... 160
- 포천시공고제2023-1856호 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:한탄강지질공원센터)결정(변경)을위한주민공람  
공고 ..... 162

**기 타**

-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-212호 하천공사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..... 164
-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-213호 하천점용(변경)허가고시 ..... 165

경기도 고시 제2023-191호

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고시

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. 7. 3  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 개요(변경)

가. 관리기관(변경없음)

- 관리기관 : 김포시

나. 조성목적(변경)

- 계획적 개발을 통한 영상·문화산업의 창작 거점 도모
- 경기도 영상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문화산업의 현실화
-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구축 및 김포시의 이미지 제고
-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전진기지 확보

다. 개발개요(변경)

- 명 칭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
- 위 치 :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, 걸포동 일원
- 면 적 : (기정) 1,121,000㎡  
(변경) 1,116,570㎡
- 사업시행자 : (기정)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23, 625호, (주)한강시네폴리스개발(김관주)  
(변경)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4, 608호, 609호(장기동, 한강블루) (주)한강시네폴리스개발(김관주)
- 개발기간 : (기정) 2009년 3월 ~ 2021년 12월 31일  
(변경) 2009년 3월 ~ 2023년 12월 31일
- 개발방법 : 전면매수에 의한 SPC 민, 관 공동개발

## 라. 추진경위(변경)

- '08. 05. 01 : 한강시네폴리스 김포시 선정(경기영상위원회)
- '09. 03. 06 : 산업단지 공급물량확보(1.243km<sup>2</sup>)
- '10. 01. 21 :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(김포시 → 경기도)
- '11. 09. 06 :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(조건부 가결)
- '11. 10. 21 :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 (원안가결)
- '11. 12. 23. :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[경기도 고시 제2011-391호]
- '14. 11. 05 :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14-5152호]
- '15. 10. 05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 
[경기도고시 제2015 - 5169호]
- '17. 03. 08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17 - 5056호]
- '17. 07. 31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17 - 5196호]
- '19. 12. 27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19 - 5213호]
- '20. 05. 21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20 - 5098호]
- '20. 08. 28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20 - 5179호]
- '20. 12. 31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20 - 5280호]
- '21. 02. 04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(변경)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21 - 5030호]
- '21. 12. 29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21-5220호]
- '23. 05. 31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
[경기도 고시 제2023- 155호]

#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**마. 분양현황(변경)**

**【기정】**

| 구 분            | 분양대상<br>(㎡) | 분양(임대) 가능 면적 |     |         | 조성기간      | 조성기관             | 비고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분 양 | 미분양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계              | 727,524     | 727,524      | -   | 727,524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산업시설구역         | 286,284     | 286,284      | -   | 286,284 | '09 ~ '21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       |
| 복합시설구역         | 146,639     | 146,639      | -   | 146,639 | '09 ~ '21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주1) 참조 |
| 지원<br>시설<br>구역 | 소계          | 256,550      | -   | 256,550 | '09 ~ '21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주거시설용도      | 159,092      | -   | 159,092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지원시설용도      | 36,996       | -   | 36,996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상업시설용도      | 60,462       | -   | 60,462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공공<br>시설<br>구역 | 소계          | 38,051       | -   | 38,051  | '09 ~ '21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주차장         | 12,481       | -   | 12,481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학교          | 25,570       | -   | 25,570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주1) 세부용도별 계획은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.

**【변경】**

| 구 분        | 분양대상<br>(㎡) | 분양(임대) 가능 면적 |     |         | 조성기간      | 조성기관             | 비고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| 분 양 | 미분양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계          | 717,314     | 717,314      | -   | 717,314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산업시설구역     | 287,326     | 287,326      | -   | 287,326 | '09 ~ '23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변전소포함  |
| 복합시설구역     | 130,228     | 130,228      | -   | 130,228 | '09 ~ '23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주1) 참조 |
| 지원시<br>설구역 | 소계          | 251,103      | -   | 251,103 | '09 ~ '23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       |
|            | 주거시설용도      | 156,095      | -   | 156,095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| 지원시설용도      | 38,659       | -   | 38,659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| 상업시설용도      | 56,349       | -   | 56,349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공공시<br>설구역 | 소계          | 48,657       | -   | 48,657  | '09 ~ '23 | (주)한강<br>시네폴리스개발 |        |
|            | 주차장         | 7,361        | -   | 7,361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| 학교          | 33,034       | -   | 33,034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| 사회복지시설      | 6,610        | -   | 6,610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| 공공청사        | 1,652        | -   | 1,652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주1) 세부용도별 계획은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.

주2) 분양, 미분양 구분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**바. 입주현황(변경)**

-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입주 대상 업체에게 공급하고 사용할 예정임
- 입주시기는 수의계약, 분양공고 등을 통해 확보된 기업과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반영 계획임

**【기정】**

| 구 분   | 업체수 |             |          | 면적(㎡)   |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| 계   | 21.1월<br>현재 | 향후<br>계획 | 계       | 21.1월<br>현재 | 향후<br>계획 |
| 소계  | 38  | -           | 38       | 432,923 | -           | 432,923  |
| 58. 출판업   | 5   | -           | 5        | 14,478  | -           | 14,478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<br>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11  | -           | 11       | 189,966 | -           | 189,966  |
| 61. 통신업<br>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             | 1   | -           | 1        | 13,784  | -           | 13,784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| 19  | -           | 19       | 168,831 | -           | 168,831  |
| 70. 연구개발업<br>71. 전문서비스업<br>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| 1   | -           | 1        | 17,683  | -           | 17,683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<br>60. 방송업<br>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| 1   | -           | 1        | 28,181  | -           | 28,181   |

주1)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,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**【변경】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체수 |              |          | 면적(m <sup>2</sup> )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  | 23.05월<br>현재 | 향후<br>계획 | 계                   | 23.05월<br>현재 | 향후<br>계획 |
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  | -            | 55       | 415,086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415,086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1   | -            | 1        | 53,619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53,619 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1. 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4   | -            | 4        | 84,908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84,908   |
| 70.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71.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8   | -            | 8        | 169,335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169,335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1   | -            | 1        | 12,665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12,665 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4   | -            | 4        | 11,406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11,406   |
| 61. 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9   | -            | 9        | 37,486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37,486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70.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| 1   | -            | 1        | 18,782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18,782   |
| 71.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23  | -            | 23       | 23,023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23,023 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1. 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70.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| 4   | -            | 4        | 3,862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3,862    |
| 71.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
주1)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,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  
 주2) 산업시설용지 내 변전소(에너지공급설비)(2,468m<sup>2</sup>)는 해당 기능 유지를 위해 업종배치계획에서 제외  
 주3)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)중 태양력 발전업(35114)에 한하여,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만 설치 가능



사. 입지여건(변경)

【기정】

| 시 설 명 | 총 계획(규모 및 용량)   |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| 시행기관  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도로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로(일반) : 연장(L) = 445m, 면적(A) = 18,262㎡</li> <li>• 대로(일반) : 연장(L) = 2,669m, 면적(A) = 86,581㎡</li> <li>• 주로(일반) : 연장(L) = 6,627m, 면적(A) = 116,454㎡</li> <li>• 소로(일반) : 연장(L) = 496m, 면적(A) = 4,008㎡</li> <li>• 소로(특수) : 연장(L) = 791m, 면적(A) = 5,018㎡</li> </ul> | '09 ~ '21              | 사업시행자  |
| 용수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급계통 : 고촌정수장 → 시네폴리스 배수지 → 시네폴리스</li> <li>• 총용수량 : 7,623㎡/일(감 131㎡/일)</li> <li>- 공업용수 : - ㎡/일(감 128㎡/일)</li> <li>- 생활용수 : 7,623㎡/일(감 3㎡/일)</li> </ul>  | '09 ~ '21              | 사업시행자  |
| 오, 폐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오수처리계통 : 사업지구 → 오수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 → 김포공공하수처리장 → 한강</li> <li>• 오수 발생량 : 6,128㎡/일(감 6㎡/일)</li> <li>• 폐수처리 : 위탁처리</li> <li>• 폐수발생량(일최대) : - ㎡/일(감 70 ㎡/일)</li> </ul>   | '09 ~ '21<br>'09 ~ '21 | 사업시행자  |
| 폐기물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활 폐기물 : 50.14톤/일(증 30.108톤/일) → 재활용 및 위탁처리</li> <li>• 배출시설계 폐기물 : 99.7톤/일(증 14.672톤/일) → 재활용 및 위탁처리</li> <li>• 지정 폐기물 : 54.5톤/일(증 45.812톤/일) → 재활용 및 위탁처리</li> </ul>  | '09 ~ '21              | 사업시행자  |
| 전력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전력공사 김포 변전소에서 공급</li> <li>• 사용량 : 418,880(Mwh/년)</li> </ul>  | '09 ~ '21              | 한국전력공사 |
| 통신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김포 KT에서 공급</li> <li>• 회선수 : 13,728 회선(감 5회선)</li> </ul>  | '09 ~ '21              | KT     |
| 에너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 공급</li> <li>• 24,194(Gcal/년) - LNG 26,983(천Nm³/년) -석유환산 28,143(toe/년)</li> </ul>   | '09 ~ '21              | 지역난방공사 |

【변경】

| 시 설 명 | 총 계획(규모 및 용량)  | 사업기간      | 시행기관   |
|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|
| 도로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로(일반) : 연장(L) = 445m, 면적(A) = 8,387㎡</li> <li>• 대로(일반) : 연장(L) = 2,809m, 면적(A) = 93,128㎡</li> <li>• 중로(일반) : 연장(L) = 5,974m, 면적(A) = 102,202㎡</li> <li>• 중로(특수) : 연장(L) = 41m, 면적(A) = 498㎡</li> <li>• 소로(일반) : 연장(L) = 653m, 면적(A) = 5,786㎡</li> <li>• 소로(특수) : 연장(L) = 286m, 면적(A) = 1,505㎡</li> </ul> | '09 ~ '23 | 사업시행자  |
| 용수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급계통 : 고촌정수장 → 시네폴리스 배수지 → 시네폴리스</li> <li>• 총용수량 : 7,821㎡/일(증 198㎡/일)</li> <li>- 공업용수 : - ㎡/일( - ㎡/일)</li> <li>- 생활용수 : 7,821㎡/일(증 198㎡/일)</li> </ul>   | '09 ~ '23 | 사업시행자  |
| 오, 폐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오수처리계통 : 사업지구 → 오수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 → 김포공공하수처리장 → 한강</li> <li>• 오수 발생량 : 7,201㎡/일(증 1,073㎡/일)</li> <li>• 폐수처리 : 폐수 발생업체는 입주 제한(물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13]의 제1종 ~ 제4종 사업장 입주 제한. 단, 제5종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전량위탁처리 시 입주 허용)</li> </ul>   | '09 ~ '23 | 사업시행자  |
| 폐기물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활 폐기물 : 50.60톤/일(증 0.46톤/일) → 재활용 및 위탁처리</li> <li>• 배출시설계 폐기물 : 241.7톤/일(증 142톤/일) → 재활용 및 위탁처리</li> <li>• 지정 폐기물 : 48.4톤/일(감 6.1톤/일) → 재활용 및 위탁처리</li> </ul>  | '09 ~ '23 | 사업시행자  |
| 전력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전력공사 김포 변전소에서 공급</li> <li>• 사용량 : 400,050(Mwh/년)(감 18,830Mwh/년)</li> </ul>  | '09 ~ '23 | 한국전력공사 |
| 통신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김포 KT에서 공급</li> <li>• 회선수 : 13,289 회선(감 439회선)</li> </ul>   | '09 ~ '23 | KT     |
| 에너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 공급</li> <li>• 23,412(Gcal/년) - LNG 19,698(천Nm³/년) -석유환산 20,545(toe/년)</li> </ul>  | '09 ~ '23 | 지역난방공사 |

2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

가. 기본방향(변경없음)

1)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(변경없음)

-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단지 전체면적으로 하되, 입주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시설구역과 복합시설구역을 중심으로 수립함

2) 기본방향(변경없음)

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“산업집적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함
-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시설구역, 복합시설구역, 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, 녹지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
- 산업시설구역과 복합시설구역은 세부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필지는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함

3) 추진방향(변경)

【기정】

- 산업시설구역은 주요유치업종계획과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관리함
-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용도세분이 가능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시설구역중 일부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하는 계획 수립
-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, 필요한 경우에 확충 제공함
- 환경오염과 공해유발 업체는 배치 억제 또는 이전 유도하여 산업단지로 인한 영향 최소화 유도

【변경】

- 산업시설구역은 주요유치업종계획과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관리함
-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, 필요한 경우에 확충 제공함
- 환경오염과 공해유발 업체는 배치 억제 또는 이전 유도하여 산업단지로 인한 영향 최소화 유도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(변경)

1) 용도별 구역 면적(변경)

| 구분        |    | 계         | 산업시설구역  | 복합시설구역  | 지원시설구역  | 공공시설구역  | 녹지시설구역 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면적<br>(㎡) | 기정 | 1,121,000 | 286,284 | 146,639 | 256,550 | 306,811 | 124,716 |
|           | 변경 | 1,116,570 | 287,326 | 130,228 | 251,103 | 303,642 | 144,271 |
| 비율<br>(%) | 기정 | 100.0     | 25.5    | 13.1    | 22.9    | 27.4    | 11.1    |
|           | 변경 | 100.0     | 25.7    | 11.7    | 22.5    | 27.2    | 12.9    |

2) 용도별 구역의 세분(변경)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| 계     | 공장시설<br>용도 | 문화산업<br>시설용도 | 정보통신산업<br>시설용도 | 지식산업<br>시설용도 | 복합<br>시설용도 | 기타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|
| 면적<br>(㎡) | 계          | 기정    | 432,923    | -            | 401,456        | 13,784       | 17,683     | -      | -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변경    | 415,086    | -            | 345,348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69,738 | - |
|           | 산업시설<br>구역 | 기정    | 286,284    | -            | 272,500        | 13,784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-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변경    | 284,858    | -            | 233,902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50,956 | - |
|           | 복합시설<br>구역 | 기정    | 146,639    | -            | 128,956        | -            | 17,683     | -      | -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변경    | 130,228    | -            | 111,446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18,782 | - |
| 비율(%)     | 기정         | 100.0 | -          | 92.7         | 3.2            | 4.1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  |
|           | 변경         | 100.0 | -          | 83.2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16.8       | -      |   |

※ 산업시설용지 내 변전소(에너지공급설비)(2,468㎡)는 해당 기능 유치를 위해 업종배치계획에서 제외  
 ※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)중 태양력 발전업(35114)에 한하여,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만 설치 가능

3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(변경)

【기정】

-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층수, 높이 등에 대한 적용기준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.
-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용도별 세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「김포시 주차장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한다.
- 산업시설구역, 복합시설구역 외에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의 건축 및 입주는 불허한다.

【변경】

-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층수, 높이 등에 대한 적용기준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.
-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용도별 세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,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을 우선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「김포시 주차장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한다.
- 산업시설구역, 복합시설구역 외에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의 건축 및 입주는 불허한다.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제6항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로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)의 태양력발전업(35114)을 위한 시설. 단 건축물(지붕 및 옥상)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① 산업시설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    | 위 치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산업1~<br>산업11 | 산업1~<br>산업11 | 용도             | • 건축물 용도는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건폐율은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용적률은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층수는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br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br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• 지붕 및 옥상<br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br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 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br><br>• 담장 및 대문<br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 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br><br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<br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br><br>• 옥외광고물<br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br><br>• 야간경관<br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 |

【변경】

| 도면<br>번호     | 위 치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산업1~<br>산업14 | 산업1~<br>산업14 | 용도             | • 건축물 용도는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건폐율은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용적률은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• 건축물의 층수는 <별표1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br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(이주공장지는 3m)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 담장 및 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주차             | • 시설면적 200㎡당 1대 이상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.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< 별표 1 >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

【기정】

| 구분        | 산업시설용지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|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정보서비스업(63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**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*****</li> </ul> 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정보서비스업(63)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**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| 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|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|  |
| 건폐율       | 80% 이하        |  | 80% 이하        |  |  |
| 용적률       | 280% 이하       |  | 280% 이하       |  |  |
| 최고층수      | 6층<br>(29m이하) | 5층<br>(55m이하)  | 6층<br>(29m이하) | 6층<br>(29m이하, 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<br>33m이하)   |  |
| 해당가구      | 산업1<br>(임대용지) | 산업11   | 산업5, 산업6      | 산업3  |  |

\*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1>내 용도에 한정

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2>내 용도에 한정

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

\*\*\*\* 물류시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43조에 따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화하여야 함

\*\*\*\*\*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% 이하에 한함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| 구분        | 산업시설용지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 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출판업(58)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
| 건폐율       | 80% 이하        | 80% 이하  |
| 용적률       | 280% 이하       | 280% 이하   |
| 최고층수      | 6층<br>(29m이하) | 6층<br>(29m이하, 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 33m이하)   |
| 해당가구      | 산업2           | 산업4, 산업7  |

\*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1>내 용도에 한정

\*\* 물류시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43조에 따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화하여야 함

| 구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시설용지  |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건축물<br>용도  | 허용<br>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(59), 방송업(60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**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*****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: 통신업(61),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통합 및관리업(62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**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*****</li> </ul> |
|  | 불허<br>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
| 건폐율  | 8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80% 이하  |
| 용적률  | 28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80% 이하   |
| 최고층수   | 5층 (25m이하,<br>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<br>33m이하) | 6층 (29m이하,<br>물류시설일 경우에 한해<br>33m이하)  | 6층 (65m이하)  |
| 해당가구   | 산업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9   | 산업10  |
| <p>*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&lt;별표1-1&gt;내 용도에 한정</p> <p>*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&lt;별표1-2&gt;내 용도에 한정</p> <p>**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</p> <p>**** 물류시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43조에 따라 물류시설용도로 세분화 하여야 함</p> <p>*****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% 이하에 한함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


< 별표 1 >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 
【변경】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   | 산업시설용지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출판업(58), 영상·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, 정보서비스업(6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: 통신업(61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****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출판업(58), 영상·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, 정보서비스업(6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****</li> </ul>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
| 건폐율       | 70% 이하        | 70% 이하  |   |
| 용적률       | 280% 이하       | 280% 이하   |   |
| 최고층수      | 6층<br>(29m이하) | 6층<br>(29m이하)   |   |
| 해당가구      | 산업1           | 산업2, 산업3  |   |

\*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1>내 용도에 한정

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2>내 용도에 한정

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

\*\*\*\*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% 이하에 한함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구분        |          | 산업시설용지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|-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출판업(58), 영상·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, 방송업(60)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: 컴퓨터 프로그래밍 ·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: 통신업(61)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정보서비스업(63)<br/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시설 : 연구개발업(70), 전문서비스업 (71),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(72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/ul>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
| 건폐율       |          | 70% 이하   | 70% 이하  |
| 용적률       |          | 280% 이하  | 280% 이하   |
| 최고층수      |          | 6층<br>(29m이하)  | 6층<br>(29m이하)   |
| 해당가구      |          | 산업4, 산업7, 산업8  | 산업5, 산업6  |

\*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1>내 용도에 한정

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2>내 용도에 한정

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| 구분        | 산업시설용지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|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정보서비스업(6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영상·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, 방송업(60), 정보서비스업(6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****</li> </ul> |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|               |  |
| 건폐율       | 70% 이하        |  | 70% 이하   |               |  |
| 용적률       | 280% 이하       |  | 280% 이하  |               |  |
| 최고층수      | 6층<br>(39m이하) | 6층<br>(33m이하)  | 5층<br>(39m이하)  | 5층<br>(55m이하) |  |
| 해당가구      | 산업10          | 산업9  | 산업11, 산업12   | 산업13          |  |

\*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1>내 용도에 한정  
 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2>내 용도에 한정  
 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미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 
 \*\*\*\*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% 이하에 한함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구분        | 산업시설용지   |
|-----------|--|
| 건축물<br>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영상·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, 방송업(60)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시설 : 컴퓨터 프로그래밍·시스템통합 및 관리업(62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****</li> </ul> |
| 불허<br>용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|
| 건폐율       | 70% 이하   |
| 용적률       | 280% 이하  |
| 최고층수      | 6층<br>(65m이하)  |
| 해당가구      | 산업14   |

\*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1>내 용도에 한정  
 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1-2>내 용도에 한정  
 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  
 \*\*\*\*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형공장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20% 이하에 한함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**【기정】**

< 별표 1-1 >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

| 분류번호  | 업 종 명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6410 |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|
| 26421 | 방송장비 제조업          |
| 26422 | 이동전화기 제조업         |
| 26429 |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|
| 26519 |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|
| 26529 |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     |

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

< 별표 1-2 >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

| 구 분       | 업 종  |
|-----------|--|
| 1. 제조업    | 18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<br>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br>28. 전기장비 제조업<br>33. 기타 제품 제조업   |
| 2. 지식기반산업 | 33. 기타 제품 제조업 중 광고물작성업<br>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중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,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<br>70. 연구개발업<br>72.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<br>73. 전문디자인업 |
| 3. 정보통신산업 | 58. 출판업<br>62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<br>63. 정보서비스업<br>66. 금융지원 서비스업  |

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신분류코드(중분류)

【변경】

< 별표 1-1 > 도시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 (변경없음)

| 분류번호  | 업 종 명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6410 |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|
| 26421 | 방송장비 제조업          |
| 26422 | 이동전화기 제조업         |
| 26429 |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|
| 26519 |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|
| 26529 |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     |

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

< 별표1-2 >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(변경)

| 구 분       | 업 종  |
|-----------|--|
| 1. 제조업    | 22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<br>24. 1차 금속 제조업<br>25.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<br>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br>28. 전기장비 제조업<br>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br>32. 가구 제조업<br>33. 기타 제품 제조업  |
| 2. 지식기반산업 | 33. 기타 제품 제조업 중 광고물작성업<br>58. 출판업<br>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중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,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<br>70. 연구개발업<br>71. 전문서비스업 중 광고업,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,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<br>72.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<br>73. 전문디자인업<br>74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업<br>75. 사업 지원 서비스업 중 경비, 경호 및 탐정업,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|
| 3. 정보통신산업 | 58. 출판업<br>61. 우편 및 통신업 중 전기 통신업<br>62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<br>63. 정보서비스업<br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br>66. 금융지원 서비스업  |
| 4. 입주허용시설 | 68. 부동산업<br>-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<br>-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|

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신분류코드(중분류)

② 복합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복합1~<br>복합5 | 복합1~<br>복합5                  | 용도             | • 건축물 용도는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건폐율은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용적률은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• 건축물의 층수는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br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br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 담장 및 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|                |   |

【변경】

| 도면<br>번호    | 위 치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복합1~<br>복합4 | 복합1~<br>복합4 | 용도             | • 건축물 용도는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건폐율은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용적률은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• 건축물의 층수는 <별표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br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br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• 지붕 및 옥상<br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br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br><br>• 담장 및 대문<br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br><br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<br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br><br>• 옥외광고물<br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br><br>• 야간경관<br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주차             | • 「김포시 주차장 조례」에 따른다.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.



< 별표 2 > 복합용지 건축물 허용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(변경)

【기정】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복합용지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건<br>축<br>물<br><br>용<br>도 | 허용<br>용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시설*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 산업시설 : 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(59), 방송업(60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li>■ 상업시설*</li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</li> <li>• 판매시설</li> <li>■ 지원시설*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•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방송통신시설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시설*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 산업시설 : 정보서비스업(63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li>■ 상업시설*</li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판매시설</li> <li>■ 지원시설*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•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  |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|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|
| 건폐율                       | 60% 이하       | 80% 이하   |  |
| 용적률                       | 500% 이하      | 330% 이하  |  |
| 최고층수                      | 16층 (100m이하) | 5층 (55m이하)   |  |
| 해당가구                      | 복합1          | 복합2, 복합4   |  |

\*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  
 -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%이상, 상업시설면적 30%이하, 지원시설면적 10%이하로 계획  
 -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 
 -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% 이하에 한함

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 1-2>내 용도에 한정

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| 복합용지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시설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시설 : 연구개발업(70), 전문서비스업(71),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(72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■ 상업시설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판매시설</li> </ul> </li> <li>■ 지원시설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•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시설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영상·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(59), 방송업(60), 정보서비스업(63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•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(물류단지는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·가공·조립·분류·수리·포장·상표부착·판매·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■ 상업시설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판매시설</li> </ul> </li> <li>■ 지원시설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•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
| 건폐율       | 80% 이하     | 80% 이하   |   |
| 용적률       | 330% 이하    | 330% 이하  |   |
| 최고층수      | 5층 (55m이하) | 5층 (55m이하)   |   |
| 해당가구      | 복합3        | 복합5  |   |

\*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  
 -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%이상, 상업시설면적 30%이하, 지원시설면적 10%이하로 계획  
 -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 
 -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% 이하에 한함

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 1-2>내 용도에 한정

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

| 【변경】      |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
| 구분        | 복합용지           |   |   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시설*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*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영상·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59), 방송업(60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■ 상업시설*</li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</li> <li>• 판매시설</li> <li>■ 지원시설*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•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방송통신시설(데이터센터 제외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시설*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정보서비스업(63)<br/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li>■ 상업시설*</li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판매시설</li> <li>■ 지원시설*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•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   |
| 건폐율       | 60% 이하         | 60% 이하  |   |
| 용적률       | 330% 이하        | 330% 이하   |   |
| 최고층수      | 10층<br>(55m이하) | 10층<br>(55m이하)  |   |
| 해당가구      | 복합1            | 복합2, 복합4  |   |

\*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  
 -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%이상, 상업시설면적 30%이하, 지원시설면적 10%이하로 계획  
 -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 
 -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% 이하에 한함

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 1-2>내 용도에 한정

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 | 복합용지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<br>용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시설*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: 정보서비스업(6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방송통신 시설 중 데이터센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시설 : 연구개발업(70), 전문서비스업(71),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(72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**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***</li> <li>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업시설*</li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판매시설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시설*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</li> <li>•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|
|           | 불허<br>용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
| 건폐율       | 60% 이하      |   |
| 용적률       | 330% 이하     |   |
| 최고층수      | 10층 (55m이하) |   |
| 해당가구      | 복합3         |   |

\*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에 따라 복합용지계획을 위하여 시설의 세부용도별 비율 설정

-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산업시설면적 60%이상, 상업시설면적 30%이하, 지원시설면적 10%이하로 계획
-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- 문화 및 집회시설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% 이하에 한함

\*\*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<별표 1-2>내 용도에 한정

\*\*\*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.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은 불허

③ 단독주택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단독1      | 단독1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(다중주택 제외)</li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*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6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20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| 최고층수           | • 4층 이하 (20m이하)   |
|          |     | 주택의규모<br>및 세대수 | • 주택규모는 <별표3-1>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~2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,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,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, 재료의 물성,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. 단,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</li> <li>-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,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지붕형태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지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, 노출된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.</li> <li>2. 경사지붕일 경우 경사도는 1:1~1:3의 범위로 하며,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,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(경사방향, 경사각도 등), 실용적(우수처리 등)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</li> <li>3.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.</li> <li>4.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, 안테나,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</li> </ol> </li> <li>-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 등의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담장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-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,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. 단,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.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|

\* 단독주택용지내 제1,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% 이하에 한함

| 【변경】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 단독1      | 단독1 | 허용<br>용도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(다중주택 제외)</li> <li>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*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    | • 5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    | • 20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    | • 4층 이하 (20m이하)   |
|          |     | 주택의<br>규모 및<br>세대수 | • 주택규모는 <별표3-1>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,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,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, 재료의 물성,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. 단,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</li> <li>-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,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지붕형태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독주택용지의 지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.</li> <li>1.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, 노출된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.</li> <li>2.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담장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1.2m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-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,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. 단,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.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  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|
|          |     | 주차                 | • 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  |

\* 단독주택용지내 제1,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% 이하에 한함  
 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.

④ 공동주택용지(변경)  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공동1      | 공동1                          | 허용용도            | •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 | • 6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 | • 23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       | • 25층 이하 (92m이하)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의 규모<br>및 세대수 | • 주택규모는 <별표3-1>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 및<br>건축선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</li> <li>• 풍부한 녹지공간,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탑상형 배치 권장</li> <li>• 주거동과 주거동사이에는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</li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태 및 외관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면은 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, 창호, 발코니 등의 구조물,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 권장</li> <li>• 주거동의 지붕은 개성있는 경관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계획</li> <li>•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</li> <li>• 계단실,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(4m) 이하 설치를 권장</li> <li>•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(엘리베이터 관련)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</li> <li>• 장애인을 위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,노인,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|                 |  |

| 【변경】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 공동1      | 공동1 | 허용<br>용도           | •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    | • 3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    | • 23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    | • 25층 이하 (92m이하)   |
|          |     | 주택의<br>규모 및<br>세대수 | • 주택규모는 <별표3-1>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.</li> <li>• 풍부한 녹지공간,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의 열린 시야 확보를 위해 고층 탑상형 배치 권장한다.</li> <li>•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는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한다.</li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br/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면은 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, 창호, 발코니 등의 구조물, 외장 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 권장한다.</li> <li>• 주거동의 지붕은 개성있는 경관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계획한다.</li> <li>•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.</li> <li>• 계단실,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(4m) 이하 설치를 권장한다.</li> <li>•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(엘리베이터 관련)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한다.</li> <li>• 장애인을 위한 계획<br/>-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,노인,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.</li> <li>• 옥외광고물<br/>-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li>• 야간경관<br/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  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br>(단,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 변경 가능)   |
|          |     | 주차                 | • 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 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.



⑤ 주상복합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|
| 주상1      | 주상1  | 용도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3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(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)은 주거용도 90%이하, 주거외 용도 10%이상으로 한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| 건폐율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용적률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5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| 최고층수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8층 이하 (122m 이하)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주택의 규모<br>및 세대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규모는 &lt;별표3-1&gt;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강 조망권 및 통경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함.</li> <li>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건축지정선 또는 벽면지정선은 해당 획지의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건축물의 해당 수직면이 이를 선에 접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</li> <li>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수직적으로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외 용도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(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. 단, 주차장, 기계실 및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)를 원칙으로 하며,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| 형태<br>및<br>외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(타워형)을 권장하며, 입면적은 3,500제곱미터이하(26층 이상의 주거동의 경우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해당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3,500제곱미터 초과가능),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주거동의 입면은 지상층부(1층~3층구간내), 기준층부, 최상층부(최상층1~2층구간내)로 구분하며, 각 부분 간에는 다음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색채 변화</li> <li>- 재질 변화</li> <li>- 외관의 디자인 변화</li> </ul> </li> <li>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,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.</li> <li>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.8미터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되, 간선가로변에는 설치 할 수 없다.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|   |

【변경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 | 구분   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주상1      | 주상1   | 용도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3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(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)은 주거 용도 90%이하, 주거외 용도 10%이상으로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| 건폐율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| 용적률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5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| 최고<br>층수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8층 이하 (건축물 높이 122m 이하)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| 주택의<br>규모 및<br>세대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규모는 &lt;별표3-1&gt;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강 조망권 및 통경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한다.</li> <li>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</li> <li>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수직적으로 복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외 용도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(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. 단, 주차장, 기계실 및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)를 원칙으로 하며,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·계단 등을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(타워형)을 권장하며, 입면적은 3,500제곱미터이하(26층 이상의 주거동의 경우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해당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3,500제곱미터 초과가능),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다.(단,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 초과 가능)</li> <li>주거동의 입면은 지상층부, 기준층부, 최상층부로 구분하며, 각 부분 간에는 다음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함께 적용하여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색채 변화</li> <li>재질 변화</li> <li>외관의 디자인 변화</li> </ul> </li> <li>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,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.</li> <li>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.8미터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되, 간선가로변에는 설치 할 수 없다.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br/>(단, 건축심의에서 허용할 경우 변경 가능)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   |   |
| 주차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  | 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.

< 별표 3 >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(변경없음)

| 구 분       |           | 주상복합용지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|
| 건축물<br>용도 | 허용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파트, 부대복리시설</li> <li>• 불허용도를 제외한 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</li> </ul>   |   |
|           | 3층이하 권장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불허용도를 제외한 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</li> </ul>  |   |
|           | 불허용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</li> <li>•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원·안마시술소</li> <li>• 의료시설중 정신병원·요양소·격리병원</li> <li>• 숙박시설</li> <li>• 위락시설</li> <li>• 창고시설</li> <li>• 공장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</li> <li>•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</li> <li>•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</li> <li>• 발전시설</li> <li>• 교정 및 군사시설</li> <li>• 관광휴게시설</li> <li>•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출입·이용금지업소</li> </ul> |

< 별표 3-1 > 주택규모 및 세대수,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, 최고층수

【기정】

| 획지<br>번호 | 주택유형<br>(㎡)       | 획지면적<br>(㎡) | 세대수<br>(세대) | 인구수<br>(인) | 평균규모<br>(㎡) | 최고층수<br>(층) | 건폐율<br>(%) | 허용<br>용적률<br>(%)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단독1      | 265㎡초과            | 10,488      | 40          | 106        | 277         | 4           | 60         | 200              |    |
| 공동1      | 60~85㎡미만<br>85㎡초과 | 50,925      | 1,100       | 2,904      | 115         | 25          | 60         | 230              |    |
| 주상1      | 60~85㎡미만<br>85㎡초과 | 97,679      | 2,760       | 7,286      | 120         | 38          | 60         | 450<br>(주거:400)  |    |
| 합 계      |                   | 159,092     | 3,900       | 10,296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   |

【변경】

| 획지<br>번호 | 획지면적<br>(㎡) | 세대수<br>(세대) | 인구수<br>(인) | 평균<br>규모<br>(㎡) | 최고층수<br>(층) | 건폐율<br>(%) | 허용<br>용적률<br>(%)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단독1      | 11,550      | 38          | 250        | 298             | 4           | 50         | 200               |    |
| 공동1      | 50,907      | 1,100       | 2,904      | 115             | 25          | 30         | 230               |    |
| 주상1      | 76,449      | 2,705       | 7,141      | 120             | 38          | 50         | 450<br>(주거 : 400) |    |
| 합 계      | 138,906     | 3,843       | 10,295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   |

⑥ 상업시설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상업1      | 상업1                          | 권장용도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4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제1, 2종 근린생활시설(단,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(단, 극장 및 영화관에 한함)</li> <li>판매시설</li> <li>의료시설 중 병원(단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</li> <li>업무시설</li> <li>위락시설</li> <li>-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li> <li>-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7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75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층 이하 (100m이하)</li> <li>• 1층부의 높이는 4.5미터를 권장하며,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의 높이를 4.5미터로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-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</li> <li>-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,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(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)</li> <li>-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</li> <li>-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획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</li> <li>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.</li> <li>•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획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층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.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•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(방송-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li>• 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업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장애인을 위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업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,노인,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|                |   |

| 【변경】     |  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|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 상업1      | 상업1  | 권장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4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제1, 2종 근린생활시설(단,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(단, 극장 및 영화관에 한함)</li> <li>판매시설</li> <li>의료시설 중 병원(단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</li> <li>업무시설</li> <li>위락시설</li> <li>-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li> <li>-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건폐율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용적률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5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| 최고<br>층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5층 이하 (100m이하)</li> <li>1층부의 높이는 4.5미터를 권장하며,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의 높이를 4.5미터로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</li> <li>-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,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(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)</li> <li>-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</li> </ul> </li> <li>-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확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</li> <li>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.</li> <li>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획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.</li> <li>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층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.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 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li>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업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.</li> </ul> </li> <li>장애인을 위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업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,노인,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|  | 색채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 |
| 주차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</li> </ul> |                | 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.

⑦ 업무시설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업무1      | 업무1                          | 권장용도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4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제1, 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에 한함</li> <li>의료시설(격리병원, 정신병원, 요양소 제외)</li> <li>교육연구시설</li> <li>운동시설(철타이 설치된 실외골프장 제외)</li> <li>일반업무시설(지상연면적의 60% 이상)</li> <li>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전신전화국, 통신용시설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6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35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      | • 20층 이하 (90m이하)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 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담장 및 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 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층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,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 치토록 한다.</li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|                |  |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【변경】     |     |   |  |  |  |
|----------|-----|---|--|--|--|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| 계 획 내 용  |  |  |
| 업무1      | 업무1 | 권장<br>용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4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)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에 한함</li> <li>• 의료시설(격리병원, 정신병원, 요양소 제외)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운동시설(철타이 설치된 실외골프장 제외)</li> <li>• 일반업무시설(지상연면적의 60% 이상)</li> <li>•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전신전화국, 통신용시설</li> </ul>   |  |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| • 60% 이하   |  |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| • 350% 이하  |  |  |
|          |     | 최고<br>층수  | • 25층 이하 (90m이하)   |  |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|  |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 담장 및 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층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,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.</li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  | 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 |  |  |
|          |     | 주차  | • 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   |  |  |
|          |     | 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|  |  |  |

⑧ 숙박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숙박1      | 숙박1 | 허용용도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4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전시장</li> <li>• 위탁시설</li> <li>• 관광휴게시설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불허용도           |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7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50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| 최고층수           | • 14층 이하 (80m이하)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 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 담장 및 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면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,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.</li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|



| 【변경】     |     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 숙박1      | 숙박1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용도는 &lt;별표4&gt;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전시장</li> <li>• 위탁시설</li> <li>• 관광휴게시설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불허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0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5층 이하 (80m이하)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 · 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 담장 및 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면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,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.</li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주차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</li> </ul>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| < 별표 4 > 상업시설·숙박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용도분류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【기정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업시설·숙박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업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숙박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무시설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단독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동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“라”목중 안마원, “사”, “아”목 제외) |
|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고시원 제외)     |
|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                  | ●<br>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          | ●<br>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           |
| 종교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판매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철타이 설치된 실외<br>골프연습장 제외)         | ●<br>(철타이 설치된 실외<br>골프연습장 제외) | ○<br>(철타이 설치된 실외<br>골프연습장 제외)  |
| 운수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정신, 요양, 격리병원 제외)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정신, 요양, 격리병원 제외)         |
| 교육연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노유자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업무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오피스텔 제외)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숙박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<br>(일반숙박시설 및<br>생활숙박시설에 한함)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락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지형물등에 의해<br>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<br>한함)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창고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<br>(폐차장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<br>(폐차장 제외)                  |
|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정 및 군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송통신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발전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) ○: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(●:권장)  
X:불허용도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【변경】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| 상업·숙박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상업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숙박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무시설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단독주택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동주택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“라”목중 안마원, “사”, “아”목 제외) |
|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고시원 제외)     |
| 문화 및 집회시설    | ●<br>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               | ●<br>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          | ●<br>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           |
| 종교시설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판매시설         | ●<br>(철타이 설치된 실외<br>골프연습장 제외)      | ●<br>(철타이 설치된 실외<br>골프연습장 제외) | ○<br>(철타이 설치된 실외<br>골프연습장 제외)  |
| 운수시설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시설         | ●<br>(정신, 요양, 격리병원 제외)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정신, 요양, 격리병원 제외)         |
| 교육연구시설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노유자시설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련시설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동시설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업무시설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오피스텔 제외)               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숙박시설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락시설         | ●<br>(지형물등에 의해 주거지역과<br>차단된 경우 한함) | 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장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창고시설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관련시설      | ○<br>(폐차장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| X<br>X                        | ○<br>(폐차장 제외)                  |
|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정 및 군사시설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송통신시설       | ○<br>(데이터센터 제외)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●<br>(데이터센터 제외)                |
| 발전시설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묘지관련시설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광휴게시설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례식장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) ○: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(●:권장)  
X:불허용도

⑨ 근린생활시설용지【신설】

| 도면<br>번호    | 위 치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근린1<br>~근린4 | 근린1<br>~근린4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종 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원 제외)</li> <li>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집회장 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)</li> <li>문화 및 집회시설</li> <li>판매시설</li> <li>의료시설 중 병원(단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</li> <li>교육연구시설</li> <li>노유자시설(단, 주택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제외)</li> <li>운동시설(단,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업무시설</li> <li>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</li> <li>방송통신시설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70% 이하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350% 이하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• 5층 이하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주방향(전면)을 폭이 넓은 도로로 향하도록 배치</li> <li>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,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 및 옥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주차장            | • 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

| ⑩ 유치원용지(변경없음) |  |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|
| 도면<br>번호      | 위 치  | 구분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 유치원1          | 유치원1   | 허용 용도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연구시설</li> <li>- 학교 중 유치원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|  | 건폐율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|  | 용적률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|  | 최고<br>층수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층 이하 (20m이하)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|  | 배치 및<br>건축선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교사 및 학생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 또는 공원·녹지를 향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|  | 형태<br>및<br>외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 및 옥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|               |   |

⑪ 학교용지(변경없음)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
| 학교1      | 학교1 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연구시설</li> <li>- 학교 중 초등학교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건폐율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| 용적률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최고 층수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층 이하 (20m이하)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교사 및 학생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 또는 공원·녹지를 향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li>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쪽에 배치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.</li> <li>- 담장은 체육시간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|                |  |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
| 학교2      | 학교2 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연구시설</li> <li>- 학교 중 중학교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| 건폐율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| 용적률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최고<br>층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층 이하 (20m이하)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활동이 집적되는 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교사 및 학생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 또는 공원·녹지를 향하도록 권장한다.</li> <li>•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쪽에 배치되도록 권장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 한다.</li> <li>-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.</li> <li>- 담장은 체육시간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색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|                |  |

⑫ 종교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종교1      | 종교1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교시설(봉안당 제외)</li> <li>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건축물 연면적의 30% 이하에 한함)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6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20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• 4층 이하 (20m이하)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.</li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 등의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-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 |



| 【변경】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도면<br>번호  | 위 치   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 종교1, 2  | 종교1, 2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교시설(봉안당 제외)</li> <li>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건축물 연면적의 30% 이하에 한함)</li> </ul>  |
|   |   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• 60% 이하  |
|   |   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• 200% 이하   |
|   |   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• 4층 이하 (20m이하)   |
|   |   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.</li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|
|   |   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 등의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-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 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옥외광고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옥외광고물(간판)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야간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야간경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|        | 색채   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|
|   |        | 주차             | • 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  |
| 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|

⑬ 공공청사용지【신설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공청1      | 공청1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</li> <li>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층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</li> <li>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한다.</li> <li>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,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</li> </ul> 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 및 옥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 등의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나 간접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.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색채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주차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</li> </ul>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

⑭ 사회복지시설용지【신설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사복1      | 사복1                | 허용<br>용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</li> <li>•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6조에 따른 문화시설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</li> <li>• 노유자시설</li> <li>•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| • 60% 이하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| • 200% 이하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최고<br>층수    | • 4층 이하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배치 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</li> <li>•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한다.</li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,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형태 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 등의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-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 없는 간접조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.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색채          | •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   |
| 주차       | • 「김포시 주차장조례」에 따른다 |             |  |

주)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

⑮ 변전소(에너지공급설비)용지【신설】
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전1       | 전1  | 허용<br>용도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에너지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</li> <li>•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</li> </ul>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최고<br>층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층 이하 (13m이하)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배치<br>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형태<br>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|

⑩ 기타시설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위1                      | 위1                      | 허용용도     | 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와 그 부대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3호에 한함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| • 50% 이하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| • 100% 이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| • 3층 이하 (13m이하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태 및 외관  | 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   |
| 오1                      | 오1                      | 허용용도     | 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| • 20% 이하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| • 100% 이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| • 3층 이하 (13m이하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태 및 외관  | 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   |
| 주1,<br>주2,<br>주4,<br>주5 | 주1,<br>주2,<br>주4,<br>주5 | 허용용도     | •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)에 한하며,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,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이어야 한다.<br>•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.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폐율      | • 80% 이하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     | • 350% 이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| • 5층 이하 (18m이하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태 및 외관  | • 지붕 및 옥상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한다.<br>•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<br>•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, 0.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<br>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 |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| 도면 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|---|
| 주3    | 주3  | 허용용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)에 한하며,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,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면적의 70%이상이어야 한다.</li> <li>•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| • 60% 이하  |
|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| • 500% 이하   |
|       |     | 최고층수     | • 5층 이하 (18m이하)   |
|       |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|
|       |     | 형태 및 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붕 및 옥상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한다.</li> <li>•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</li> <li>•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, 0.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li>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|
| 유1    | 유1  | 허용용도     | 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수지   |
|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| • 20% 이하  |
|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| • 100% 이하   |
|       |     | 최고층수     | • 3층 이하 (13m이하)   |
|       |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li>- 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/li> <li>- 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  |
|       |     | 형태 및 외관  | 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   |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【변경】     |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|
| 도면<br>번호 | 위 치 | 구분       | 계 획 내 용  |
| 위1       | 위1  | 허용용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와 그 부대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3호에 한함)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최고층수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층 이하 (13m이하)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형태 및 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 |
| 위2       | 위2  | 허용용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와 그 부대시설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</li> </ul>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최고층수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층 이하(13m이하)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형태 및 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 |
| 오1       | 오1  | 허용용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하수도 중 우수중계펌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건폐율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|     | 용적률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최고층수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층 이하 (13m이하)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배치 및 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|     | 형태 및 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 |

| 도면<br>번호  | 위 치       | 구분        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주1~<br>주7 | 주1~<br>주7 | 허용용도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)에 한하며,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,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면적의 70%이상이어야 한다.</li> <li>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차장1, 2(일반공업지역) 80% 이하</li> <li>주차장3·4(준주거지역), 5(제1종일반주거지역) 60% 이하</li> <li>※ 주차장6, 7은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건폐율 기준 적용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차장1, 2(일반공업지역) 350% 이하</li> <li>주차장3·4(준주거지역) 500% 이하</li> <li>주차장5(제1종일반주거지역) 300% 이하</li> <li>※ 주차장6, 7은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건폐율 기준 적용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층 이하 (18m이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,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배치 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형태 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 및 옥상 층은 자유롭게 설치하되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,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권장한다.</li> <li>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</li> <li>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, 0.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</li> <li>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|
| 유1        | 유1        | 허용용도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수지</li> </ul>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건폐율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% 이하</li> </ul> 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용적률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0% 이하</li> </ul>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최고층수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층 이하 (13m이하)</li> </ul>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배치 및<br>건축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른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한계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~6m</li> <li>벽면지정선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</li> </ul> </li> </ul>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형태 및<br>외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.</li> </ul>  |



4)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)

- 대지내 공지, 대지내 차량출입, 주차장설치 등의 적용기준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.
-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용도별 세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① 산업시설·복합용지·변전소(에너지공급설비)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산업1~<br>산업11,<br><br>복합1~<br>복합5 | 산업1~<br>산업11,<br><br>복합1~<br>복합5 | 대지내<br>공 지      | • 대지내 공지 조성은 <별표5>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지내<br>차량<br>출입 | •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<br>•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<br>- 하천, 보행로, 버스정차대, 가감속차선설치구간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<br>-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, 기타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, 지하도 입구,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차장<br>설치       | 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 |

【변경】

| 도면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치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|--|-----------------|---|
| 산업1~<br>산업14,<br><br>복합1~<br>복합4<br><br>전1 | 산업1~<br>산업14,<br><br>복합1~<br>복합4<br><br>전1 | 대지내<br>공 지      | • 대지내 공지 조성은 <별표5>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 |
|  |  | 대지내<br>차량<br>출입 | •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<br>•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<br>- 하천, 보행로, 버스정차대, 가감속차선설치구간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<br>-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, 기타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, 지하도 입구,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|
|  |  | 주차장<br>설치       | 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 |

② 상업·업무·숙박용지(변경없음)

| 도면<br>번호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상업1,<br>업무1,<br>숙박1 | 상업1,<br>업무1,<br>숙박1 | 대지내<br>공 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지내 공지 조성은 &lt;별표5&gt;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li>• 횡단구배는 최소 1.5%, 최고 5%로 하며, 2%를 표준으로 설치한다.</li> <li>•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, 지하주차램프 등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대지내<br>차량<br>출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</li> <li>•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천, 보행로, 버스정차대, 가감속차선설치구간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</li> <li>-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, 기타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, 지하도 입구,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주차장<br>설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
#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③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상복합·근린생활시설·유치원·학교·종교용지·공공청사·사회복지시설(변경)

**【기정】**

| 도면<br>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치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|--|-----------------|---|
| 단독1,<br>공동1,<br>주상1,<br>유치원1,<br>학교1~2,<br>종교1 | 단독1,<br>공동1,<br>주상1,<br>유치원1,<br>학교1~2,<br>종교1 | 대지내<br>공 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지내 공지 조성은 &lt;별표5&gt;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li>• 횡단구배는 최소 1.5%, 최고 5%로 하며, 2%를 표준으로 설치한다.</li> </ul>  |
|  |  | 대지내<br>차량<br>출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</li> <li>•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천, 보행로, 버스정차대, 가감속차선설치구간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</li> <li>-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, 기타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, 지하도 입구,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</li> </ul> </li> </ul> |
|  |  | 주차장<br>설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
**【변경】**

| 도면<br>번호   | 위 치 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|---|-----------------|---|
| 단독1,<br>공동1,<br>주상1,<br>근린1~4,<br>유치원1,<br>학교1~2,<br>종교1~2,<br>공청1,<br>사복1 | 단독1,<br>공동1,<br>주상1,<br>근린1~4,<br>유치원1,<br>학교1~2,<br>종교1~2,<br>공청1, 사복1 | 대지내<br>공 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지내 공지 조성은 &lt;별표5&gt;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li>• 횡단구배는 최소 1.5%, 최고 5%로 하며, 2%를 표준으로 설치한다.</li> </ul>  |
|  |   | 대지내<br>차량<br>출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</li> <li>•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천, 보행로, 버스정차대, 가감속차선설치구간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</li> <li>-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, 기타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, 지하도 입구,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</li> </ul> </li> </ul> |
|  |   | 주차장<br>설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
④ 기타시설용지(변경)

【기정】

| 도면<br>번호   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위1,<br>오1,<br>주1~5,<br>유1 | 위1,<br>오1,<br>주1~5,<br>유1 | 대지내<br>공 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지내 공지 조성은 &lt;별표5&gt;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지내<br>차량<br>출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</li> <li>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천, 보행로, 버스정차대, 가감속차선설치구간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</li> <li>버스정류장 및 정차대, 기타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, 지하도 입구,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차장<br>설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
【변경】

| 도면<br>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위1,<br>위2,<br>오1,<br>주1~7,<br>유1 | 위1,<br>위2,<br>오1,<br>주1~7,<br>유1 | 대지내<br>공 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지내 공지 조성은 &lt;별표5&gt;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지내<br>차량<br>출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</li> <li>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천, 보행로, 버스정차대, 가감속차선설치구간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</li> <li>버스정류장 및 정차대, 기타 승하차시설, 가감속차선 설치구간, 지하도 입구,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차장<br>설치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 |

< 별표 5 > 대지내 공지 설치기준(변경없음)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|---|
| 전면공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“전면공지”라 함은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·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. 이때,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“보도 연결형 전면공지”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.</li> <li>- “차도 연결형 전면공지”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“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: 전면공지에는 ‘보행지장물’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- 경계부 처리 : 전면공지의 경계부 처리</li> </ul> </li> <li>•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(보도가 없을 경우)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.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·정차를 금지한다. 다만,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.</li> <li>•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포장 :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며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.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공개공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“공개공지”라 함은 건축법 제67조,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.</li> <li>•“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”은 김포시 건축 조례 38조에 의해 조성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공개공지의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교차로 각각부(2개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각각부에 배치)</li> <li>•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</li> <li>•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-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공개공지 조성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,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공개공지 면적의 최소 폭은 5m 이상 이어야 하며,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.</li> <li>-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%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cm ~ 50cm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,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cm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%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,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</li> <li>•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김포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,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·식재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(이하 “설비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없으며,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/ul> |

< 별표 6 > 색채에 관한 사항(변경)

【기정】

| 구 분            | 계획 내용  |
|----------------|--|
| 기본원칙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김포시만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대표경관색을 추출하고 이를 색채계획에 적용하여 도시 이미지 확립</li> <li>-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도시색채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통합적 도시색채경관 형성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거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거지의 주변 환경(녹지, 수변)을 고려하고, 그와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운 색채계획이 필요</li> <li>- 단독주택의 경우, 다양성은 인정하되 같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시 주택의 지붕, 외관 등의 색채에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하며, 공동주택의 경우, 브랜드의 색상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변과 조화를 우선시하도록 유도</li> </ul> </li> <li>• 상업·업무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업과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요소(옥외광고물, 건축물외관 등)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균형 있는 색채 배색에 중점을 둔 계획이 필요</li> <li>- 도시의 공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가로 축을 고려한 색채계획과 주변에 위치한 지역들과의 조화되도록 하는 색채계획이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• 공장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관을 저해하는 색채(고채도의 색채)의 사용을 지양하고, 자연녹지와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하도록 색채계획이 이루어져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• 공공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은 사용자들이 부담 없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색채의 사용이 요구됨</li> </ul> </li> </ul> |

| 【변경】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|
| 구 분            | 계획 내용  |
| 기본원칙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방향</li> <li>-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경관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색채계획 수립</li> <li>-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되도록 색채범위를 설정하여 통합적인 도시색채경관 형성</li> </ul>   |
|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 건축물</li> <li>- 중명도, 중채도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 조성</li> <li>- 경직된 단조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가지 재질을 활용한 배색 적용</li> <li>- 강조색은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색을 다채롭게 사용</li> <br/> <li>• 상업·업무·복합건축물</li> <li>- 주거지와 차별화 되나, 전체 지구와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</li> <li>- 중명도, 중채도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 조성</li> <li>-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색을 다채롭게 사용</li> <br/> <li>• 공동주택·주상복합 건축물</li> <li>- 주거를 위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차분한 색채 사용</li> <li>- 저층부와 중층부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행자 접근과 시점을 고려한 색채계획</li> <li>- 경쾌하고 산뜻한 주거지 색채경관 연출</li> <br/> <li>• 공공 건축물 및 종교건축물</li> <li>- 주조색과 보조색은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색을 다채롭게 사용하되 고채도 사용 지양</li> <li>- 자연소재 사용 및 재료 고유의 색채적용 권장</li> <li>- 중명도, 중채도 위주로 자연색 또는 2차색 이상 혼합색 사용</li> <br/> <li>•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</li> <li>-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환경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색채 적용</li> <li>- 중명도, 중채도 위주로 자연색 또는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</li> <li>- 다양성은 인정하되, 같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시 주택의 지붕, 외관 등의 색채에 통일감 부여</li> </ul> |

주)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.

< 별표 7 > 가로시설물 설치기준(변경)

【기정】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|---|
| 기본원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 이미지의 개념을 구상화하기 위한 디자인 모티브</li> <li>- 김포시만의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디자인 모티브를 추출함</li> </ul> |

【변경】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|---|
| 기본원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 이미지의 개념을 구상화하기 위한 디자인 모티브</li> <li>- 김포시만의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디자인 모티브를 추출함</li> </ul> |

주)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.

< 별표 8 >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(변경)

【기정】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|--|
| 기본원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차등화</li> <li>업소당 간판 총 수량 최소화</li> <li>인접 간판, 거리,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</li> <li>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한 충분한 여백 확보</li> <li>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,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 권장</li> <li>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</li> </ul> |

【변경】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|
|------|--|
| 기본원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소당 간판 총 수량 최소화</li> <li>인접 간판, 거리,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</li> <li>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한 충분한 여백 확보</li> <li>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,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 권장</li> <li>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</li> </ul> |

주)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.

< 별표 9 >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(변경)

【기정】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|---|
| 기본원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지를 구성하는 건축의 형태별로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사업시설로 구분, 차별적 조명 연출 유도방안 수립</li> </ul> |

【변경】

| 구 분  | 계 획 내 용   |
|------|---|
| 기본원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지를 구성하는 건축의 형태별로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사업시설로 구분 차별적 조명연출 유도방안 수립</li> </ul> |

주)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따른다.



#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5)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【신설】

○ 대지내 전체 계획생태면적률은 22.3%이며,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지별로 「생태면적률 적용 지침, 2016.7, 환경부」상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생태면적률 15%이상 확보해야함

| 구 분          | 면적(㎡)     | 구성비 (%) | 적용면적 (㎡)   | 가중치 | 생태면적 (㎡)   | 비고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| 1,116,570 | 100.0   | -          | -   | 249,099.19 | -            |
| 산업시설용지       | 417,554   | 37.4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|
| 산업시설         | 284,858   | 25.5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|
| 복합시설1        | 53,619    | 4.8     | 8,042.85   | 1.0 | 8,042.85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복합시설2        | 25,221    | 2.3     | 3,783.15   | 1.0 | 3,783.15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복합시설3        | 18,782    | 1.7     | 2,817.30   | 1.0 | 2,817.30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복합시설4        | 32,606    | 2.9     | 4,890.90   | 1.0 | 4,890.90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변전소(에너지공급설비) | 2,468     | 0.2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|
| 주거시설용지       | 156,095   | 14.0    | 23,414.25  | 1.0 | 23,414.25  | 조경면적 15%     |
| 지원시설용지       | 38,659    | 3.5     | 5,798.85   | 1.0 | 5,798.85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상업시설용지       | 56,349    | 5.0     | 8,452.35   | 1.0 | 8,452.35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공공시설용지       | 447,913   | 40.1    | 173,184.70 | -   | 165,083.54 | -            |
| 도 로          | 211,506   | 18.9    | 10,358.15  | 1.0 | 10,358.15  | 식수대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10,358.15  | 0.3 | 3,107.45   | 자전거도로 (투수포장)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2,003.00   | 0.3 | 600.90     | 보행자도로 (투수포장) |
| 주차장          | 7,361     | 0.7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|
| 학 교          | 33,034    | 3.0     | 4,995.10   | 1.0 | 4,955.10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오수중계펌프장      | 901       | 0.1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|
| 유수지          | 31,256    | 2.8     | 27,367.64  | 1.0 | 27,367.64  | 자연지반녹지       |
| 광 장          | 11,322    | 1.0     | -          | -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 |
| 공 원          | 52,496    | 4.7     | 52,496.00  | 1.0 | 52,496.00  | 자연지반녹지       |
| 녹 지          | 91,775    | 8.2     | 91,775.00  | 1.0 | 91,775.00  | 자연지반녹지       |
| 사회복지시설       | 6,610     | 0.6     | 991.50     | 1.0 | 991.50     | 조경면적 15%     |
| 공공청사(소방서)    | 1,652     | 0.1     | 247.80     | 1.0 | 247.80     | 조경면적 15%     |

▣ 생태면적률(%) 산정결과 : 249,099.19㎡ / 1,116,570㎡ x 100% = 22.3%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다. 업종별 배치계획(변경)

1) 세부 배치계획(변경)

【기정】

| 구 분      | 계   |         | '21. 01월 현재 |    | 향후계획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| 업체수   | 면적      | 업체수         | 면적 | 업체수  | 면적      |         |
| 소계       | 38  | 432,923 | -           | -  | 38   | 432,923 |         |
| 입주<br>현황 | 58. 출판업   | 5       | 14,478      | -  | -    | 5       | 14,478  |
|          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<br>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11      | 189,966     | -  | -    | 11      | 189,966 |
|          | 61. 통신업<br>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| 13,784      |    |      | 1       | 13,784  |
|          | 63. 정보서비스업  | 19      | 168,831     | -  | -    | 19      | 168,831 |
|          | 70. 연구개발업<br>71. 전문서비스업<br>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| 1       | 17,683      | -  | -    | 1       | 17,683  |
|          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<br>60. 방송업<br>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| 1       | 28,181      | -  | -    | 1       | 28,181  |

주1)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,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**【변경】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체수 |              |          | 면적(㎡)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  | 23.05월<br>현재 | 향후<br>계획 | 계       | 23.05월<br>현재 | 향후<br>계획 |
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  | -            | 55       | 415,086 | -            | 415,086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1   | -            | 1        | 53,619  | -            | 53,619 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1. 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4   | -            | 4        | 84,908  | -            | 84,908   |
| 70.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71.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-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|
| 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8   | -            | 8        | 169,335 | -            | 169,335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1   | -            | 1        | 12,665  | -            | 12,665 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4   | -            | 4        | 11,406  | -            | 11,406   |
| 61. 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9   | -            | 9        | 37,486  | -            | 37,486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70.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| 1   | -            | 1        | 18,782  | -            | 18,782   |
| 71.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8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9.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23  | -            | 23       | 23,023  | -            | 23,023   |
| 6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2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1. 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63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70.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| 4   | -            | 4        | 3,862   | -            | 3,862    |
| 71.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72. 건축기술,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
주1) 입주업체수는 산업단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 따르며, 업체수는 1필지에 1개 업체로 산정하였음  
 주2) 산업시설용지 내 변전소(에너지공급설비)(2,468㎡)는 해당 기능 유치를 위해 업종배치계획에서 제외  
 주3)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)중 태양력 발전업(35114)에 한하여,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만 설치 가능

2) 배치기준(변경없음)

-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유치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, 효율적인 업종별 배치
- 입주대상기업이 지역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 등과 입주협약 등을 통해 유치되는 경우, 업종배치와 달리 배치 가능함
-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
- ※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배치하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(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)의 규정에 의거 배치함

라. 입주관리계획(변경)

1) 입주(임대 포함) 대상업종(변경)

- 산업단지계획상 입주 대상업종(변경없음)

< 입주대상업종 >

| 구분     | 입주대상업종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입주대상업종 | I.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|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 (58)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| (59)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 (60)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| (61)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컴퓨터프로그래밍,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| (62)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(63) |
|        | M.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|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| (70)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(71)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| (72) |

- 산업단지관리계획상 입주 대상업종(변경)

【기정】

| 구 분     | 입주업종  | 비고  |
|---------|---|---|
| 입주대상 업종 |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<br>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68122) |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/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 |

【변경】

| 구 분     | 입주업종   | 비고  |
|---------|--|---|
| 입주대상 업종 |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<br>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68122)  |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/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 |
|         |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) 중 태양력발전업(35114)에 한함 | 산업단지내 건축물(지붕 및 옥상)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2) 불허업종(입주제한업종)(변경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【기정】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구 분   | 업종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불허업종<br>(입주제한 업종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구단위계획상 각 용지별로 정하고 있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li>• 입주업체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각 업체별 생산공정, 공종별 대기오염물질 발생공정,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, 추후 개별업체의 입주전 해당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고,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</li> <li>• 사업지구 내 입주업체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」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,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발생이 많은 공정 포함업체는 가능한 우선 배제토록 할 계획이며, 입주가 불가피할 경우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인근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</li> <li>•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엿 제외한다(기입주 계약된 업체에도 동 배출기준 적용함)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  | 1)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  | 특정대기유해물질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  | <table border="0"> <tr><td>1. 카드뮴 및 그 화합물</td><td>19. 이황화메틸</td></tr> <tr><td>2. 시안화수소</td><td>20. 아닐린</td></tr> <tr><td>3. 납 및 그 화합물</td><td>21. 클로로포름</td></tr> <tr><td>4. 폴리염화비페닐</td><td>22. 폼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5. 크롬 및 그 화합물</td><td>23. 아세트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6. 비소 및 그 화합물</td><td>24. 벤지딘</td></tr> <tr><td>7. 수은 및 그 화합물</td><td>25. 1,3-부타디엔</td></tr> <tr><td>8. 프로필렌 옥사이드</td><td>26.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</td></tr> <tr><td>9. 염소 및 염화수소</td><td>27. 에틸렌옥사이드</td></tr> <tr><td>10. 불소화물</td><td>28. 디클로로메탄</td></tr> <tr><td>11. 석 먼</td><td>29. 스틸렌</td></tr> <tr><td>12. 니켈 및 그 화합물</td><td>30. 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3. 염화비닐</td><td>31. 1,2-디클로로에탄</td></tr> <tr><td>14. 다이옥신</td><td>32. 에틸벤젠</td></tr> <tr><td>15. 페놀 및 그 화합물</td><td>33. 트리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6. 베릴륨 및 그 화합물</td><td>34. 아크릴로니트릴</td></tr> <tr><td>17. 벤젠</td><td>35. 히드라진</td></tr> <tr><td>18. 사염화탄소</td><td></td></tr> </table> | 1.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| 19. 이황화메틸   | 2. 시안화수소        | 20. 아닐린      | 3. 납 및 그 화합물 | 21. 클로로포름    | 4. 폴리염화비페닐   | 22. 폼알데하이드 | 5. 크롬 및 그 화합물        | 23. 아세트알데하이드 | 6. 비소 및 그 화합물 | 24. 벤지딘     | 7. 수은 및 그 화합물 | 25. 1,3-부타디엔  | 8. 프로필렌 옥사이드 | 26.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| 9. 염소 및 염화수소 | 27. 에틸렌옥사이드   | 10. 불소화물 | 28. 디클로로메탄 | 11. 석 먼    | 29. 스틸렌           | 12. 니켈 및 그 화합물 | 30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| 13. 염화비닐 | 31. 1,2-디클로로에탄 | 14. 다이옥신 | 32. 에틸벤젠  | 15. 페놀 및 그 화합물 | 33. 트리클로로에틸렌 | 16. 베릴륨 및 그 화합물 | 34. 아크릴로니트릴 | 17. 벤젠 | 35. 히드라진 | 18. 사염화탄소 |
| 1.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| 19. 이황화메틸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2. 시안화수소  | 20. 아닐린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3. 납 및 그 화합물  | 21. 클로로포름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4. 폴리염화비페닐  | 22. 폼알데하이드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5. 크롬 및 그 화합물   | 23. 아세트알데하이드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6. 비소 및 그 화합물   | 24. 벤지딘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7. 수은 및 그 화합물   | 25. 1,3-부타디엔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8. 프로필렌 옥사이드  | 26.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9. 염소 및 염화수소  | 27. 에틸렌옥사이드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0. 불소화물  | 28. 디클로로메탄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1. 석 먼   | 29. 스틸렌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2. 니켈 및 그 화합물  | 30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3. 염화비닐  | 31. 1,2-디클로로에탄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4. 다이옥신  | 32. 에틸벤젠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5. 페놀 및 그 화합물  | 33. 트리클로로에틸렌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6.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 | 34. 아크릴로니트릴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7. 벤젠  | 35. 히드라진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8. 사염화탄소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2) 「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특정수질유해물질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<table border="0"> <tr><td>1. 구리와 그 화합물</td><td>17. 1, 1-디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2. 납과 그 화합물</td><td>18. 1, 2-디클로로에탄</td></tr> <tr><td>3. 비소와 그 화합물</td><td>19. 클로로포름</td></tr> <tr><td>4. 수은과 그 화합물</td><td>20. 1,4-다이옥산</td></tr> <tr><td>5. 시안화합물</td><td>21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</td></tr> <tr><td>6. 유기인 화합물</td><td>22. 염화비닐</td></tr> <tr><td>7. 6가크롬 화합물</td><td>23. 아크릴로니트릴</td></tr> <tr><td>8. 카드뮴과 그 화합물</td><td>24. 브로모포름</td></tr> <tr><td>9. 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td>25. 아크릴아미드</td></tr> <tr><td>10. 트라이클로로에틸렌</td><td>26. 니프탈렌</td></tr> <tr><td>11. 페놀류</td><td>27. 폼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12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</td><td>28. 에피클로로하이드린</td></tr> <tr><td>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</td><td></td></tr> <tr><td>14. 벤젠</td><td></td></tr> <tr><td>15. 사염화탄소</td><td></td></tr> <tr><td>16. 디클로로메탄</td><td></td></tr> </table> | 1. 구리와 그 화합물  | 17. 1, 1-디클로로에틸렌 | 2. 납과 그 화합물 | 18. 1, 2-디클로로에탄 | 3. 비소와 그 화합물 | 19. 클로로포름    | 4. 수은과 그 화합물 | 20. 1,4-다이옥산 | 5. 시안화합물   | 21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| 6. 유기인 화합물   | 22. 염화비닐      | 7. 6가크롬 화합물 | 23. 아크릴로니트릴   | 8. 카드뮴과 그 화합물 | 24. 브로모포름    | 9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 | 25. 아크릴아미드   | 10. 트라이클로로에틸렌 | 26. 니프탈렌 | 11. 페놀류    | 27. 폼알데하이드 | 12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| 28.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| 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 |          | 14. 벤젠         |          | 15. 사염화탄소 |                | 16. 디클로로메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. 구리와 그 화합물  | 17. 1, 1-디클로로에틸렌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2. 납과 그 화합물   | 18. 1, 2-디클로로에탄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3. 비소와 그 화합물  | 19. 클로로포름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4. 수은과 그 화합물  | 20. 1,4-다이옥산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5. 시안화합물  | 21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6. 유기인 화합물  | 22. 염화비닐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7. 6가크롬 화합물   | 23. 아크릴로니트릴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8. 카드뮴과 그 화합물   | 24. 브로모포름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9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| 25. 아크릴아미드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0.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 | 26. 니프탈렌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1. 페놀류   | 27. 폼알데하이드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2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 | 28.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4. 벤젠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5. 사염화탄소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16. 디클로로메탄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
※ 입주대상업종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, 복합용지에 입주하는 도시형공장,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대상 업종이 계획되어 있음

| 구 분               | 업종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불허업종<br>(입주제한 업종) | 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거 도시·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data-bbox="440 465 1361 504">도시·군계획시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40 504 726 577">교통시설 (11개)</td> <td data-bbox="726 504 1361 577">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궤도, 삭도, 운하,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40 577 726 611">공간시설 (5개)</td> <td data-bbox="726 577 1361 611">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40 611 726 685">유통·공급시설 (9개)</td> <td data-bbox="726 611 1361 685">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40 685 726 759">공공·문화체육시설 (10개)</td> <td data-bbox="726 685 1361 759">학교, 운동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연구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40 759 726 833">방재시설 (8개)</td> <td data-bbox="726 759 1361 833">하천, 유수지, 저수지, 방화설비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40 833 726 907">보건위생시설 (7개)</td> <td data-bbox="726 833 1361 907">화장시설, 공동묘지, 봉안시설, 자연장지, 도축장, 장례식장, 종합의료시설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40 907 726 940">환경기초시설 (4개)</td> <td data-bbox="726 907 1361 940">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| 도시·군계획시설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시설 (11개)                   |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궤도, 삭도, 운하,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| 공간시설 (5개) | 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 | 유통·공급시설 (9개) | 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| 공공·문화체육시설 (10개) | 학교, 운동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연구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 | 방재시설 (8개)   | 하천, 유수지, 저수지, 방화설비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 | 보건위생시설 (7개) | 화장시설, 공동묘지, 봉안시설, 자연장지, 도축장, 장례식장, 종합의료시설 | 환경기초시설 (4개) | 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도시·군계획시설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교통시설 (11개)   |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궤도, 삭도, 운하,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공간시설 (5개)  | 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유통·공급시설 (9개)   | 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공공·문화체육시설 (10개)  | 학교, 운동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연구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방재시설 (8개)  | 하천, 유수지, 저수지, 방화설비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보건위생시설 (7개)  | 화장시설, 공동묘지, 봉안시설, 자연장지, 도축장, 장례식장, 종합의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환경기초시설 (4개)  | 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4)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·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40 974 478 1008">번호</th> <th data-bbox="478 974 774 1008">사고대비물질명</th> <th data-bbox="774 974 901 1008">CAS 번호</th> <th data-bbox="901 974 1361 1008">적용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포름알데하이드(Formaldehyde)</td><td>000050-00-0</td><td>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</td><td>메틸 하이드라진(Methyl hydrazine)</td><td>000060-34-4</td><td>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3</td><td>포름산(Formic acid)</td><td>000064-18-6</td><td>포름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4</td><td>메탄올(Methanol)</td><td>000067-56-1</td><td>메탄올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5</td><td>벤젠(Benzene)</td><td>000071-43-2</td><td>벤젠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6</td><td>염화메틸(Methyl chloride)</td><td>000074-87-3</td><td>염화메틸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7</td><td>메틸아민(Methylamine)</td><td>000074-89-5</td><td>메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8</td><td>시아니화수소(Hydrogen cyanide)</td><td>000074-90-8</td><td>시아니화수소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9</td><td>염화비닐(Vinyl chloride)</td><td>000075-01-4</td><td>염화비닐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0</td><td>이황화탄소(Carbon disulfide)</td><td>000075-15-0</td><td>이황화탄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1</td><td>산화에틸렌(Ethylene oxide)</td><td>000075-21-8</td><td>산화에틸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2</td><td>포스겐(Phosgene)</td><td>000075-44-5</td><td>포스겐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3</td><td>트리메틸아민(Trimethylamine)</td><td>000075-50-3</td><td>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4</td><td>산화프로필렌(Propylene oxide)</td><td>000075-56-9</td><td>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5</td><td>메틸에틸케톤(Methyl ethyl ketone)</td><td>000078-93-3</td><td>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6</td><td>메틸 비닐 케톤(Methyl vinyl ketone)</td><td>000078-94-4</td><td>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7</td><td>아크릴산(Acrylic acid)</td><td>000079-10-7</td><td>아크릴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8</td><td>메틸 아크릴레이트(Methyl acrylate)</td><td>000096-33-3</td><td>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19</td><td>니트로벤젠(Nitrobenzene)</td><td>000098-95-3</td><td>니트로벤젠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0</td><td>파라-니트로톨루엔(p-Nitrotoluene)</td><td>000099-99-0</td><td>파라-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1</td><td>염화 벤질(Benzyl chloride)</td><td>000100-44-7</td><td>염화 벤질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2</td><td>아크롤레인(Acrolein)</td><td>000107-02-8</td><td>아크롤레인 및 이를 1.0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3</td><td>알릴 클로라이드(Allyl chloride)</td><td>000107-05-1</td><td>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4</td><td>아크릴로니트릴(Acrylonitrile)</td><td>000107-13-1</td><td>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5</td><td>에틸렌디아민(Ethylenediamine)</td><td>000107-15-3</td><td>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6</td><td>알릴알코올(Allyl alcohol)</td><td>000107-18-6</td><td>알릴알코올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7</td><td>메타-크레졸(m-Cresol)</td><td>000108-39-4</td><td>메타-크레졸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8</td><td>톨루엔(Toluene)</td><td>000108-88-3</td><td>톨루엔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29</td><td>페놀(Phenol)</td><td>000108-95-2</td><td>페놀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tr><td>30</td><td>노말-부틸아민(n-Butylamine)</td><td>000109-73-9</td><td>노말-부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번호  | 사고대비물질명                        | CAS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범위  | 1         | 포름알데하이드(Formaldehyde) | 000050-00-0  |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2               | 메틸 하이드라진(Methyl hydraz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060-34-4 |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          | 3           | 포름산(Formic acid)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064-18-6 | 포름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| 4 | 메탄올(Methanol) | 000067-56-1 | 메탄올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5 | 벤젠(Benzene) | 000071-43-2 | 벤젠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6 | 염화메틸(Methyl chloride) | 000074-87-3 | 염화메틸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7 | 메틸아민(Methylamine) | 000074-89-5 | 메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8 | 시아니화수소(Hydrogen cyanide) | 000074-90-8 | 시아니화수소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9 | 염화비닐(Vinyl chloride) | 000075-01-4 | 염화비닐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0 | 이황화탄소(Carbon disulfide) | 000075-15-0 | 이황화탄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1 | 산화에틸렌(Ethylene oxide) | 000075-21-8 | 산화에틸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2 | 포스겐(Phosgene) | 000075-44-5 | 포스겐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3 | 트리메틸아민(Trimethylamine) | 000075-50-3 |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4 | 산화프로필렌(Propylene oxide) | 000075-56-9 |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5 | 메틸에틸케톤(Methyl ethyl ketone) | 000078-93-3 |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6 | 메틸 비닐 케톤(Methyl vinyl ketone) | 000078-94-4 |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7 | 아크릴산(Acrylic acid) | 000079-10-7 | 아크릴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8 | 메틸 아크릴레이트(Methyl acrylate) | 000096-33-3 |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19 | 니트로벤젠(Nitrobenzene) | 000098-95-3 |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0 | 파라-니트로톨루엔(p-Nitrotoluene) | 000099-99-0 | 파라-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1 | 염화 벤질(Benzyl chloride) | 000100-44-7 | 염화 벤질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2 | 아크롤레인(Acrolein) | 000107-02-8 | 아크롤레인 및 이를 1.0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3 | 알릴 클로라이드(Allyl chloride) | 000107-05-1 |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4 | 아크릴로니트릴(Acrylonitrile) | 000107-13-1 |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5 | 에틸렌디아민(Ethylenediamine) | 000107-15-3 |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6 | 알릴알코올(Allyl alcohol) | 000107-18-6 |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7 | 메타-크레졸(m-Cresol) | 000108-39-4 | 메타-크레졸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8 | 톨루엔(Toluene) | 000108-88-3 | 톨루엔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29 | 페놀(Phenol) | 000108-95-2 | 페놀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30 | 노말-부틸아민(n-Butylamine) | 000109-73-9 | 노말-부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
|                   | 번호   | 사고대비물질명   | CAS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  | 포름알데하이드(Formaldehyde)   | 000050-00-0                    |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2  | 메틸 하이드라진(Methyl hydrazine)  | 000060-34-4                    |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3  | 포름산(Formic acid)  | 000064-18-6                    | 포름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4  | 메탄올(Methanol)   | 000067-56-1                    | 메탄올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5  | 벤젠(Benzene)   | 000071-43-2                    | 벤젠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6  | 염화메틸(Methyl chloride)   | 000074-87-3                    | 염화메틸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7  | 메틸아민(Methylamine)   | 000074-89-5                    | 메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8  | 시아니화수소(Hydrogen cyanide)  | 000074-90-8                    | 시아니화수소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9  | 염화비닐(Vinyl chloride)  | 000075-01-4                    | 염화비닐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0   | 이황화탄소(Carbon disulfide)   | 000075-15-0                    | 이황화탄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1   | 산화에틸렌(Ethylene oxide)   | 000075-21-8                    | 산화에틸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2   | 포스겐(Phosgene)   | 000075-44-5                    | 포스겐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3   | 트리메틸아민(Trimethylamine)  | 000075-50-3                    |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4   | 산화프로필렌(Propylene oxide)   | 000075-56-9                    |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               | 메틸에틸케톤(Methyl ethyl ketone)  | 000078-93-3   |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               | 메틸 비닐 케톤(Methyl vinyl ketone)  | 000078-94-4   |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               | 아크릴산(Acrylic acid)   | 000079-10-7   | 아크릴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                | 메틸 아크릴레이트(Methyl acrylate)   | 000096-33-3   |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                | 니트로벤젠(Nitrobenzene)  | 000098-95-3   |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                | 파라-니트로톨루엔(p-Nitrotoluene)  | 000099-99-0   | 파라-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                | 염화 벤질(Benzyl chloride)   | 000100-44-7   | 염화 벤질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2                | 아크롤레인(Acrolein)  | 000107-02-8   | 아크롤레인 및 이를 1.0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3                | 알릴 클로라이드(Allyl chloride)   | 000107-05-1   |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4                | 아크릴로니트릴(Acrylonitrile)   | 000107-13-1   |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5                | 에틸렌디아민(Ethylenediamine)  | 000107-15-3   |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6                | 알릴알코올(Allyl alcohol)   | 000107-18-6   |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7                | 메타-크레졸(m-Cresol)   | 000108-39-4   | 메타-크레졸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8                | 톨루엔(Toluene)   | 000108-88-3   | 톨루엔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9                | 페놀(Phenol)   | 000108-95-2   | 페놀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0                | 노말-부틸아민(n-Butylamine)  | 000109-73-9   | 노말-부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| 업종   |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
| 불허업종<br>(입주제한 업종) | 31   | 트리에틸아민(Triethylam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121-44-8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32   | 아세트산에틸(Ethyl acetate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141-78-6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33   | 시아나이드(Sodium cyanide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143-33-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. 다만, 베를린청(Ferric ferrocyanide)·황혈염(Potassium ferrocyanide)·적혈염(Potassium ferri-cyanide)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. |  |
|                   | 34   | 에틸렌이민(Ethylenim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151-56-4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35   | 톨루엔-2,4-다이소시아네이트(Toluene-2,4-diisocyanate(TDI)) | 000584-84-9 톨루엔-2,4-다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36   | 일산화탄소(Carbon monoxide)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630-08-0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37   | 아크릴일 클로라이드(Acrylyl chloride)                    | 000814-68-6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38   | 인화 아연(Zinc phosphide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1314-84-7 인화 아연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39   |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(Methyl ethyl ketone peroxide)       | 001338-23-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0   |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르론(Isophorone diisocyanate)           | 004098-71-9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르론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1   | 나트륨(Sodium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440-23-5 나트륨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2   | 염화수소(Hydrogen chloride)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647-01-0 염화수소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3   | 플루오르화수소(Hydrogen fluoride)                      | 007664-39-3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4   | 암모니아(Ammonia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664-41-7 암모니아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5   | 황산(Sulfuric acid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664-93-9 황산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6   | 질산(Nitric acid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697-37-2 질산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7   | 삼염화인(Phosphorus trichloride)                    | 007719-12-2 삼염화인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8   | 플루오린(Fluor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782-41-4 플루오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9   | 염소(Chlor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782-50-5 염소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0   | 황화수소(Hydrogen sulfide)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783-06-4 황화수소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1   | 아르신(Ars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784-42-1 아르신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2   | 클로로술포산(Chlorosulfonic acid)                     | 007790-94-5 클로로술포산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3   | 포스핀(Phosph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803-51-2 포스핀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4   | 옥시염화인(Phosphorus oxychloride)                   | 010025-87-3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5   | 이산화염소(Chlorine dioxide)                         | 010049-04-4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6   | 디보란(Dibora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19287-45-7 디보란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7   | 산화질소(Nitric oxid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10102-43-9 산화질소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8   | 니트로메탄(Nitrometha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075-52-5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59   | 질산암모늄(Ammonium nitrate)                         | 006484-52-2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0   | 헥사민(Hexamin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0100-97-0 헥사민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1   | 과산화수소(Hydrogen peroxide)                        | 007722-84-1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2   | 염소산칼륨(Potassium chlorate)                       | 003811-04-9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3   | 질산칼륨(Potassium nitrate)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757-79-1 질산칼륨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4   | 과염소산칼륨(Potassium perchlorate)                   | 007778-74-7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5   | 과망간산칼륨(Potassium permanganate)                  | 007722-64-7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6   | 염소산나트륨(Sodium chlorate)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775-09-9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7   | 질산나트륨(Sodium nitrate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07631-99-4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8   | 사린(O-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)      | 000107-44-8 사린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69   | 염화시아안(Cyanogen chloride)                        | 000506-77-4 염화시아안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|  |
|                   | 비고 : 벤젠, 염화메틸, 시안화수소, 메틸 아크릴레이트, 알릴 클로라이드, 에틸렌디아민, 노말-부틸아민, 트리 에틸아민,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(1기압) 아래에서 인화점이 21℃ 이하 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.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,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. |   |  |  |

\* 입주대상업종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, 복합용지에 입주하는 도시형공장,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대상 업종이 계획되어 있음

| 【변경】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|
| 구 분  | 업종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불허업종<br>(입주제한 업종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구단위계획상 각 용지별로 정하고 있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li>• 입주업체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각 업체별 생산공정, 공종별 대기오염물질 발생공정,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, 추후 개별업체의 입주전 해당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고,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</li> <li>• 사업지구 내 입주업체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」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,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발생이 많은 공정 포함업체는 가능한 우선 배제토록 할 계획이며, 입주가 불가피할 경우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인근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</li> <li>•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(기입주 계약된 업체에도 동 배출기준 적용함)</li> </ul>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 | 1)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특정대기유해물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. 카드뮴 및 그 화합물</td><td>19. 이황화메틸</td></tr> <tr><td>2. 시안화수소</td><td>20. 아닐린</td></tr> <tr><td>3. 납 및 그 화합물</td><td>21. 클로로포름</td></tr> <tr><td>4. 폴리염화비페닐</td><td>22. 포름알데히드</td></tr> <tr><td>5. 크롬 및 그 화합물</td><td>23. 아세트알데히드</td></tr> <tr><td>6. 비소 및 그 화합물</td><td>24. 벤지딘</td></tr> <tr><td>7. 수은 및 그 화합물</td><td>25. 1,3-부타디엔</td></tr> <tr><td>8. 프로필렌 옥사이드</td><td>26.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</td></tr> <tr><td>9. 염소 및 염화수소</td><td>27. 에틸렌옥사이드</td></tr> <tr><td>10. 불소화물</td><td>28. 디클로로메탄</td></tr> <tr><td>11. 석 면</td><td>29. 스틸렌</td></tr> <tr><td>12. 니켈 및 그 화합물</td><td>30. 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3. 염화비닐</td><td>31. 1,2-디클로로에탄</td></tr> <tr><td>14. 다이옥신</td><td>32. 에틸벤젠</td></tr> <tr><td>15. 페놀 및 그 화합물</td><td>33. 트리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6. 베릴륨 및 그 화합물</td><td>34. 아크릴로니트릴</td></tr> <tr><td>17. 벤 젠</td><td>35. 히드라진</td></tr> <tr><td>18. 사염화탄소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특정대기유해물질 |              | 1.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| 19. 이황화메틸   | 2. 시안화수소        | 20. 아닐린      | 3. 납 및 그 화합물 | 21. 클로로포름    | 4. 폴리염화비페닐   | 22. 포름알데히드 | 5. 크롬 및 그 화합물        | 23. 아세트알데히드 | 6. 비소 및 그 화합물 | 24. 벤지딘     | 7. 수은 및 그 화합물 | 25. 1,3-부타디엔  | 8. 프로필렌 옥사이드 | 26.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| 9. 염소 및 염화수소 | 27. 에틸렌옥사이드  | 10. 불소화물 | 28. 디클로로메탄 | 11. 석 면    | 29. 스틸렌           | 12. 니켈 및 그 화합물 | 30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| 13. 염화비닐 | 31. 1,2-디클로로에탄 | 14. 다이옥신    | 32. 에틸벤젠  | 15. 페놀 및 그 화합물 | 33. 트리클로로에틸렌 | 16.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   | 34. 아크릴로니트릴 | 17. 벤 젠 | 35. 히드라진 | 18. 사염화탄소 |  |
|  | 특정대기유해물질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.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| 19. 이황화메틸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2. 시안화수소   | 20. 아닐린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3. 납 및 그 화합물   | 21. 클로로포름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4. 폴리염화비페닐   | 22. 포름알데히드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5. 크롬 및 그 화합물  | 23. 아세트알데히드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6. 비소 및 그 화합물  | 24. 벤지딘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7. 수은 및 그 화합물  | 25. 1,3-부타디엔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8. 프로필렌 옥사이드   | 26.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9. 염소 및 염화수소   | 27. 에틸렌옥사이드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0. 불소화물   | 28. 디클로로메탄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1. 석 면  | 29. 스틸렌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2. 니켈 및 그 화합물   | 30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3. 염화비닐   | 31. 1,2-디클로로에탄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4. 다이옥신   | 32. 에틸벤젠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5. 페놀 및 그 화합물   | 33. 트리클로로에틸렌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6.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| 34. 아크릴로니트릴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7. 벤 젠  | 35. 히드라진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8. 사염화탄소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2)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특정수질유해물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. 구리와 그 화합물</td><td>17. 1, 1-디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2. 납과 그 화합물</td><td>18. 1, 2-디클로로에탄</td></tr> <tr><td>3. 비소와 그 화합물</td><td>19. 클로로포름</td></tr> <tr><td>4. 수은과 그 화합물</td><td>20. 1,4-다이옥산</td></tr> <tr><td>5. 시안화합물</td><td>21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</td></tr> <tr><td>6. 유기인 화합물</td><td>22. 염화비닐</td></tr> <tr><td>7. 6가크롬 화합물</td><td>23. 아크릴로니트릴</td></tr> <tr><td>8. 카드뮴과 그 화합물</td><td>24. 브로모포름</td></tr> <tr><td>9. 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td>25. 아크릴아미드</td></tr> <tr><td>10. 트리클로로에틸렌</td><td>26. 나프탈렌</td></tr> <tr><td>11. 페놀류</td><td>27. 폼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12.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</td><td>28. 에피클로로하이드린</td></tr> <tr><td>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</td><td>29. 페놀</td></tr> <tr><td>14. 벤젠</td><td>30. 펜타클로로페놀</td></tr> <tr><td>15. 사염화탄소</td><td>31. 스티렌</td></tr> <tr><td>16. 디클로로메탄</td><td>32.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</td></tr> <tr><td></td><td>33. 안티몬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특정수질유해물질  |          | 1. 구리와 그 화합물 | 17. 1, 1-디클로로에틸렌 | 2. 납과 그 화합물 | 18. 1, 2-디클로로에탄 | 3. 비소와 그 화합물 | 19. 클로로포름    | 4. 수은과 그 화합물 | 20. 1,4-다이옥산 | 5. 시안화합물   | 21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| 6. 유기인 화합물  | 22. 염화비닐      | 7. 6가크롬 화합물 | 23. 아크릴로니트릴   | 8. 카드뮴과 그 화합물 | 24. 브로모포름    | 9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 | 25. 아크릴아미드   | 10. 트리클로로에틸렌 | 26. 나프탈렌 | 11. 페놀류    | 27. 폼알데하이드 | 12.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 | 28.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| 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 | 29. 페놀   | 14. 벤젠         | 30. 펜타클로로페놀 | 15. 사염화탄소 | 31. 스티렌        | 16. 디클로로메탄   | 32.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 |             | 33. 안티몬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특정수질유해물질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. 구리와 그 화합물   | 17. 1, 1-디클로로에틸렌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2. 납과 그 화합물  | 18. 1, 2-디클로로에탄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3. 비소와 그 화합물   | 19. 클로로포름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4. 수은과 그 화합물   | 20. 1,4-다이옥산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5. 시안화합물   | 21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6. 유기인 화합물   | 22. 염화비닐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7. 6가크롬 화합물  | 23. 아크릴로니트릴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8. 카드뮴과 그 화합물  | 24. 브로모포름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9.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| 25. 아크릴아미드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0. 트리클로로에틸렌   | 26. 나프탈렌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1. 페놀류  | 27. 폼알데하이드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2.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  | 28.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3. 셀레늄과 그 화합물   | 29. 페놀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4. 벤젠   | 30. 펜타클로로페놀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5. 사염화탄소  | 31. 스티렌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16. 디클로로메탄   | 32.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|  | 33. 안티몬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|

※ 입주대상업종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, 복합용지에 입주하는 도시형공장,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대상 업종이 계획되어 있음



| 구 분               | 업 종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|---|---|---|----|---|--|---|----|---|--|---|-----|---|---|---|----|---|--|---|----|---|---|---|----|---|--|-----|---|---|---|---|-----|----|--|---|----|----|--|---|----|----|--|-----|-----|--|
| 불허업종<br>(입주제한 업종) | 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거 도시·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도시·군계획시설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교통시설 (11개)   |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궤도, 삭도, 운하,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공간시설 (5개)  | 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유통·공급시설 (9개)   | 유통업무설비, 수도공급설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공공·문화체육시설 (10개)  | 학교, 운동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연구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방재시설 (8개)  | 하천, 유수지, 저수지, 방화설비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보건위생시설 (7개)  | 화장시설, 공동묘지, 봉안시설, 자연장지, 도축장, 장례식장, 종합의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환경기초시설 (4개)  | 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4)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의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·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  | -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(단위: 톤)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32 1070 518 1137">번호</th> <th data-bbox="518 1070 1141 1137">사고대비물질[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(CAS No.)]</th> <th data-bbox="1141 1070 1252 1137">하위<br/>규정수량</th> <th data-bbox="1252 1070 1361 1137">상위<br/>규정수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32 1137 518 1205">1</td> <td data-bbox="518 1137 1141 1205">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(폼알데하이드)[Formalin; Formaldehyde ; 50-00-0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137 1252 1205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137 1361 1205">40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205 518 1272">2</td> <td data-bbox="518 1205 1141 1272">메틸히드라진(메틸하이드라진)[Methylhydrazine ; 60-34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205 1252 1272">1</td> <td data-bbox="1252 1205 1361 1272">2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272 518 1339">3</td> <td data-bbox="518 1272 1141 1339">포름산(폼산)[Formic acid ; 64-18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272 1252 1339">5</td> <td data-bbox="1252 1272 1361 1339">4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339 518 1406">4</td> <td data-bbox="518 1339 1141 1406">메틸알코올[Methylalcohol ; 67-56-1]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339 1252 1406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339 1361 1406">40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406 518 1473">5</td> <td data-bbox="518 1406 1141 1473">벤젠[Benzene ; 71-43-2]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406 1252 1473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406 1361 1473">2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473 518 1541">6</td> <td data-bbox="518 1473 1141 1541">염화메틸[Methyl chloride ; 74-87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473 1252 1541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473 1361 1541">2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541 518 1608">7</td> <td data-bbox="518 1541 1141 1608">메틸아민[Methylamine ; 74-89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541 1252 1608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541 1361 1608">2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608 518 1675">8</td> <td data-bbox="518 1608 1141 1675">시안화수소(사이안화수소)[Hydrogen cyanide ; 74-90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608 1252 1675">0.6</td> <td data-bbox="1252 1608 1361 1675">3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675 518 1742">9</td> <td data-bbox="518 1675 1141 1742">염화비닐(염화 바이닐)[Vinyl chloride ; 75-01-4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675 1252 1742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675 1361 1742">40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742 518 1809">10</td> <td data-bbox="518 1742 1141 1809">이황화탄소[Carbon disulfide ; 75-15-0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742 1252 1809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742 1361 1809">2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809 518 1877">11</td> <td data-bbox="518 1809 1141 1877">산화에틸렌[Ethylene oxide ; 75-21-8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809 1252 1877">2</td> <td data-bbox="1252 1809 1361 1877">2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32 1877 518 1933">12</td> <td data-bbox="518 1877 1141 1933">포스겐[Phosgene ; 75-44-5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td> <td data-bbox="1141 1877 1252 1933">0.3</td> <td data-bbox="1252 1877 1361 1933">1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번호  | 사고대비물질[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(CAS No.)] | 하위<br>규정수량 | 상위<br>규정수량 | 1 |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(폼알데하이드)[Formalin; Formaldehyde ; 50-00-0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400 | 2 | 메틸히드라진(메틸하이드라진)[Methylhydrazine ; 60-34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1 | 20 | 3 | 포름산(폼산)[Formic acid ; 64-18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5 | 40 | 4 | 메틸알코올[Methylalcohol ; 67-56-1]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400 | 5 | 벤젠[Benzene ; 71-43-2]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20 | 6 | 염화메틸[Methyl chloride ; 74-87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20 | 7 | 메틸아민[Methylamine ; 74-89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20 | 8 | 시안화수소(사이안화수소)[Hydrogen cyanide ; 74-90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0.6 | 3 | 9 | 염화비닐(염화 바이닐)[Vinyl chloride ; 75-01-4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400 | 10 | 이황화탄소[Carbon disulfide ; 75-15-0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20 | 11 | 산화에틸렌[Ethylene oxide ; 75-21-8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| 20 | 12 | 포스겐[Phosgene ; 75-44-5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0.3 | 1.5 |  |
|                   | 번호   | 사고대비물질[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(CAS No.)]  | 하위<br>규정수량 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<br>규정수량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1  |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(폼알데하이드)[Formalin; Formaldehyde ; 50-00-0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0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2  | 메틸히드라진(메틸하이드라진)[Methylhydrazine ; 60-34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3                 | 포름산(폼산)[Formic acid ; 64-18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5   |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4                 | 메틸알코올[Methylalcohol ; 67-56-1]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  |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5                 | 벤젠[Benzene ; 71-43-2]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6                 | 염화메틸[Methyl chloride ; 74-87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7                 | 메틸아민[Methylamine ; 74-89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8                 | 시안화수소(사이안화수소)[Hydrogen cyanide ; 74-90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0.6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9                 | 염화비닐(염화 바이닐)[Vinyl chloride ; 75-01-4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  |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10                | 이황화탄소[Carbon disulfide ; 75-15-0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11                | 산화에틸렌[Ethylene oxide ; 75-21-8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| 12                | 포스겐[Phosgene ; 75-44-5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0.3   | 1.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|   | 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|    |   |   |   |    |   |  |  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|    |    |  |     |     |  |

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   |  |   |     |
|----|--|---|-----|
| 13 | 트리메틸아민[Trimethylamine ; 75-50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| 20  |
| 14 | 산화 프로필렌[Propylene oxide ; 75-56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| 20  |
| 15 | 메틸에틸케톤[Methyl ethyl ketone ; 78-93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| 400 |
| 16 | 메틸비닐케톤[Methyl vinyl ketone ; 78-94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1 | 400 |
| 17 | 아크릴산[Acrylic acid ; 79-10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5 | 40  |
| 18 | 메틸아크릴레이트[Methyl acrylate ; 96-33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| 400 |
| 19 | 니트로벤젠(나이트로벤젠)[Nitrobenzene ; 98-95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5 | 40  |
| 20 | 4-니트로톨루엔(4-나이트로톨루엔)[4-Nitrotoluene ; 99-99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5 | 40  |
| 21 | 벤질클로라이드[Benzyl chloride ; 100-44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1 | 20  |
| 22 | 아크롤레인[Acrolein ; 107-02-8] 및 이를 1.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1 | 20  |
| 23 | 알릴클로라이드[Allyl chloride ; 107-05-1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| 20  |
| 24 | 아크릴로니트릴(아크릴로나이트릴)[Acrylonitrile ; 107-13-1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| 20  |
| 25 | 에틸렌디아민(에틸렌다이아민)[Ethylenediamine ; 107-15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5 | 20  |
| 26 | 알릴알코올[Allyl alcohol ; 107-18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| 40  |
| 27 | m-크레졸(m-크레솔)[m-Cresol ; 108-39-4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8 | 40  |
| 28 | 톨루엔[Toluene ; 108-88-3] 및 이를 8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| 400 |
| 29 | 페놀[Phenol ; 108-95-2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8 | 40  |
| 30 | n-부틸아민(n-부틸아민)[n-Butylamine ; 109-73-9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| 400 |
| 31 | 트리메틸아민(트라이메틸아민)[Triethylamine ; 121-44-8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| 20  |
| 32 | 아세트산에틸[Ethyl acetate ; 141-78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| 400 |
| 33 | 시아나화나트륨(사이안화나트륨)[Sodium cyanide ; 143-33-9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다만, 베를린청(Ferric ferrocyanide) · 황혈염(Potassium ferrocyanide) · 적혈염(Potassium ferri-cyanide)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. | 2 | 20  |

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   |  |     |      |
|----|--|-----|------|
| 34 | 에틸렌이민[Ethylenimine ; 151-56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| 40   |
| 35 | 톨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[Toluene-2,4-diisocyanate(2,4-TDI) ; 584-84-9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5   | 40   |
| 36 | 일산화탄소[Carbon monoxide ; 630-08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| 20   |
| 37 |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[Acryloyl chloride ; 814-68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| 40   |
| 38 | 인화아연[Zinc phosphide ; 1314-84-7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| 20   |
| 39 |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[Methyl ethyl ketone peroxide ; 1338-23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| 4   | 20   |
| 40 | 디이소시아산이소포론(다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)[Isophorone diisocyanate ; 4098-71-9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4   | 20   |
| 41 | 나트륨[Sodium ; 7440-23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0.4 | 2    |
| 42 | 염화수소[Hydrogen chloride ; 7647-01-0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40   |
|    |  | 5*  | 400* |
| 43 | 플루오르화수소(플루오린화 수소)[Hydrogen fluoride ; 7664-39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| 0.4 | 2    |
|    |  | 4*  | 20*  |
| 44 | 암모니아[Ammonia ; 7664-41-7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2   | 40   |
|    |  | 20* | 400* |
| 45 | 황산[Sulfuric acid ; 7664-93-9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400  |
| 46 | 질산[Nitric acid ; 7697-37-2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400  |
| 47 | 삼염화인[Phosphorus trichloride ; 7719-12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20   |
| 48 | 불소[Fluorine ; 7782-41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0.4 | 2    |
| 49 | 염소[Chlorine ; 7782-50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4   | 20   |
| 50 | 황화수소[Hydrogen sulfide ; 7783-06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4 | 2    |
| 51 |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[Arsine; Arsenic trihydride ; 7784-42-1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| 0.2 | 1    |
| 52 | 클로로술포산(클로로설포산)[Chlorosulfonic acid ; 7790-94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| 4   | 20   |
| 53 | 포스핀[Phosphine ; 7803-51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0.2 | 1    |
| 54 | 옥시염화인[Phosphorus oxychloride ; 10025-87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40   |
| 55 | 이산화염소[Chlorine dioxide ; 10049-04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| 40   |
| 56 | 디보란(다이보레인)[Diborane ; 19287-45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 | 1.5  |
| 57 | 산화질소[Nitric oxide ; 10102-43-9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 | 1.5  |

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   |   |     |     |
|----|---|-----|-----|
| 58 | 니트로메탄(나이트로메테인)[Nitromethane ; 75-52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40  |
| 59 | 질산암모늄[Ammonium nitrate ; 6484-52-2] 및 이를 33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60  |
| 60 | 헥사민[Hexamine ; 100-97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12  | 60  |
| 61 | 과산화수소[Hydrogen peroxide ; 7722-84-1] 및 이를 3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60  |
| 62 | 염소산칼륨[Potassium chlorate ; 3811-04-9]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| 10  |
| 63 | 질산칼륨[Potassium nitrate ; 7757-79-1]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60  |
| 64 | 과염소산칼륨[Potassium perchlorate ; 7778-74-7]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| 10  |
| 65 | 과망간산칼륨[Potassium permanganate ; 7722-64-7]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200 |
| 66 | 염소산나트륨[Sodium chlorate ; 7775-09-9]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| 10  |
| 67 | 질산나트륨[Sodium nitrate ; 7631-99-4] 및 이를 98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 60  |
| 68 | 사린[O-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; 107-44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| 0.2 | 1   |
| 69 | 염화시아안[Cyanogen chloride ; 506-77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70 | 니켈카르보닐[Nickel carbonyl ; 13463-39-3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71 |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(Germane ; Germanium tetrahydride ; 7782-65-2)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| 0.2 | 1   |
| 72 |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[Tetrafluoroethylene ; 116-14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 | 1   |
| 73 | 트리플루오로보란(트라이 플루오로 보란)[Trifluoroborane ; 7637-07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| 0.4 | 2   |
| 74 | 트리클로로붕소[Boron trichloride ; 10294-34-5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4 | 2   |
| 75 | 헥사플루오로-1,3-부타디엔(헥사플루오로-1,3-부타다이엔) [Hexafluoro-1,3-butadiene ; 685-63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0.2 | 1   |
| 76 | 브롬[Bromine ; 7726-95-6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0.3 | 1.5 |
| 77 | 세렌화수소(셀레늄화 수소)[Hydrogen selenide ; 7783-07-5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 | 1   |
| 78 | 이소프렌(아이소프렌)[Isoprene ; 78-79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| 2   | 40  |
| 79 | 1,1-디클로로에틸렌(1,1-다이클로로에틸렌) [1,1-Dichloroethylene ; 75-35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| 0.3 | 1.5 |

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일)

|    |  |     |     |
|----|--|-----|-----|
| 80 | 헥사메틸디실록산[Hexamethyl disiloxane ; 107-46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81 | 펜타카르보닐철[Pentacarbonyl iron ; 13463-40-6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82 | 오불화브롬[Bromine pentafluoride ; 7789-30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83 | 염화티오닐(염화싸이오닐)[Thionyl chloride ; 7719-09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84 | 사염화타이타늄(사염화타이타늄)[Titanium tetrachloride ; 7550-45-0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| 0.3 | 1.5 |
| 85 | 클로로피크린[Chloropicrin ; 76-06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86 | 비닐에틸에테르[Vinyl ethyl ether ; 109-92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| 2   | 40  |
| 87 | 실란(실레인)[Silane ; 7803-62-5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 | 1   |
| 88 | 디실란(다이실레인)[Disilane ; 1590-87-0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 | 1   |
| 89 | 디클로로실란(다이클로로실레인)[Dichlorosilane ; 4109-96-0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| 0.2 | 1   |
| 90 | 트리클로로실란(트라이클로로실레인) [Trichlorosilane ; 10025-78-2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| 0.3 | 1.5 |
| 91 | 메틸디클로로실란(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) [Methyldichlorosilane ; 75-54-7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| 0.3 | 1.5 |
| 92 | 메틸트리클로로실란(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) [Methyltrichlorosilane ; 75-79-6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| 0.3 | 1.5 |
| 93 | 트리클로로비닐실란[Trichlorovinylsilane ; 75-94-5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94 | 에틸트리클로로실란[Trichloroethylsilane ; 115-21-9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  | 0.3 | 1.5 |
| 95 | 테트라메틸실란(테트라메틸 실레인) [Tetramethylsilane ; 75-76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| 0.3 | 1.5 |
| 96 | 테트라클로로실리콘(테트라클로로실리콘)[Silicon Tetrachloride; 10026-04-7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| 0.3 | 1.5 |
| 97 |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[Silicon tetrafluoride ; 7783-61-1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          | 0.2 | 1   |

비고

1.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·사용시설과 보관·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(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.
2.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,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·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\*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.
3.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| 3) 입주자격(변경)  |   |
|--|---|
| 【기정】   |   |
| 구 분  | 입주자격  |
| 산업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/ 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불가피한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여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/ul>   |
| 복합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</li> <li>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를 허가하는 자</li> <li>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</li> </ul>   |
| 지원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단지 계획(지구단위계획 포함)에서 정한 주거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, 상업시설용지, 복합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</li> <li>본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, 공모조건에 참여가 가능한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</li> </ul>   |
| 공공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,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차장, 학교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공공시설 사업자</li> </ul>  |
| ※ 실수요자 :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려는 업체이거나,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거나, 사업시행자가 단지의 가치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당선된 자로 한정함 |   |
| 【변경】   |   |
| 구 분  | 입주자격  |
| 산업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/ 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불가피한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여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2호(가목2)의 태양력발전업(35114)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. 단, 건축물(지붕 및 옥상)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</li> </ul>   |
| 복합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 업종의 유치/ 공급을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</li> <li>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를 허가하는 자</li> <li>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</li> <li>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2호(가목2)의 태양력발전업(35114)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. 단, 건축물(지붕 및 옥상)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</li> </ul> |
| 지원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단지 계획(지구단위계획 포함)에서 정한 주거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, 상업시설용지, 복합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</li> <li>본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, 공모조건에 참여가 가능한 실수요자 또는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</li> </ul>   |
| 공공시설 구역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법령 및 김포시 관련 조례에 따라,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차장, 학교시설용지 등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또는 공공시설 사업자</li> </ul>  |
| ※ 실수요자 : 이주대상이 된 업체중 본 단지에 재입주하려는 업체이거나,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거나, 사업시행자가 단지의 가치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당선된 자로 한정함 |   |

4) 입주우선순위(변경없음)

|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|
| 산업시설 구역   | (1)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입주한 업체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<br>(2) 산업시설용지, 복합용지 등을 현상설계 또는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에 참여하는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(공모리츠, 부동산 펀드 등)을 활용하는 사업자<br>(3) 김포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주요유치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<br>(4)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주요유치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도내에 동일 업종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<br>(5)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요유치업종과 일치하는 업체로서 도내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<br>(6) 지역의 유치업종의 전략적 유치, 본사 이전기업, 입지효과가 큰 기업 등 관리기관의 추천이 있는 기업<br>(7)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<br>(8)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|
| 산업시설 구역 외 | (1) 공공시설구역의 경우에는 승인시 협의된 협의기관(학교 등)<br>(2) 관련법률 및 지침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산업단지 활성화 또는 가치향상을 도모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할 실수요자<br>(3) 분양공고 등 관련법률 및 지침의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실수요자<br>(4)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  |

※ (1)~(8)은 순위를 표시하며,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키되 동일순위 경합시에는 추첨하여 선정  
 ※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(분양 공고전)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음

5) 입주절차(변경없음)

- 산업집적법 제38조,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, 관리기관은 5일 이내(5일 연장 가능)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,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한다.
-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.
- 공급대상 분양토지에 대해 제안서를 통한 공모사업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실수요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.

6) 분양한도(분할 등)(변경없음)

- 최소분양면적 : 산업집적법 제39조의2, 시행규칙 제39조의3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합병 및 분할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한다. 단 용지의 최소규모는 1,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-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입주한 업체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에 공급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.

|   |
|---|
| <p>마. 사후관리계획(변경)</p> <p>1) 산업시설용지 관리(변경없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,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함</li> </ul> <p>2) 환경관리(변경)</p> <p>【기정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</li> <li>○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,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함</li> <li>○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</li> <li>○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위탁하여 처리함</li> </ul> <p>【변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</li> <li>○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,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함</li> <li>○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</li> <li>○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위탁하여 처리함</li> <li>○ 폐수 발생업체는 입주를 제한(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령 [별표13]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중 제1종~제4종사업장 입주 제한. 단, 제5종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폐수 전량 위탁처리 시 입주 허용)하고, 또한, 배출시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(전량 위탁처리 포함)하도록 함</li> <li>○ 태양력발전업(D35)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, 운용 및 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</li> </ul> <p>3) 안전관리(변경없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산업집적법」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</li> <li>○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</li> <li>○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구축</li> </ul> <p>4) 기반시설지원(변경없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</li> </ul> |
|---|



바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(변경없음)

1) 기본방향(변경없음)

-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, 우정, 소방, 통신, 금융·보험, 복리후생, 교육연구시설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
  - ※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
-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

2) 공장설립 지원(변경없음)

- 공장설립 업무 인·허가 절차 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
-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3) 생산활동 지원(변경없음)
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-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
- 기술개발 및 수출, 무역,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
- 구인·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
- 각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

4)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(변경없음)

-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
- 단지내 근로자복지회관, 어린이집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희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부여

5)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(변경없음)

-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
-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
-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
6) 지원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- 관리청사, 금융시설, 후생복지, 차량관련시설, 공공업무시설 등

사.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-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
-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
- 분양용지의 불법전매·장기 유희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
# 경 기 도 보

제7286호

2023. 7. 3. (월)

- 산업단지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관련기관 협의/조치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입주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함
  - 환경영향평가 관련 : 계획생태 면적율(20.5%) 달성 협조를 위한 조경면적 확보
- ※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김포시 조례에 따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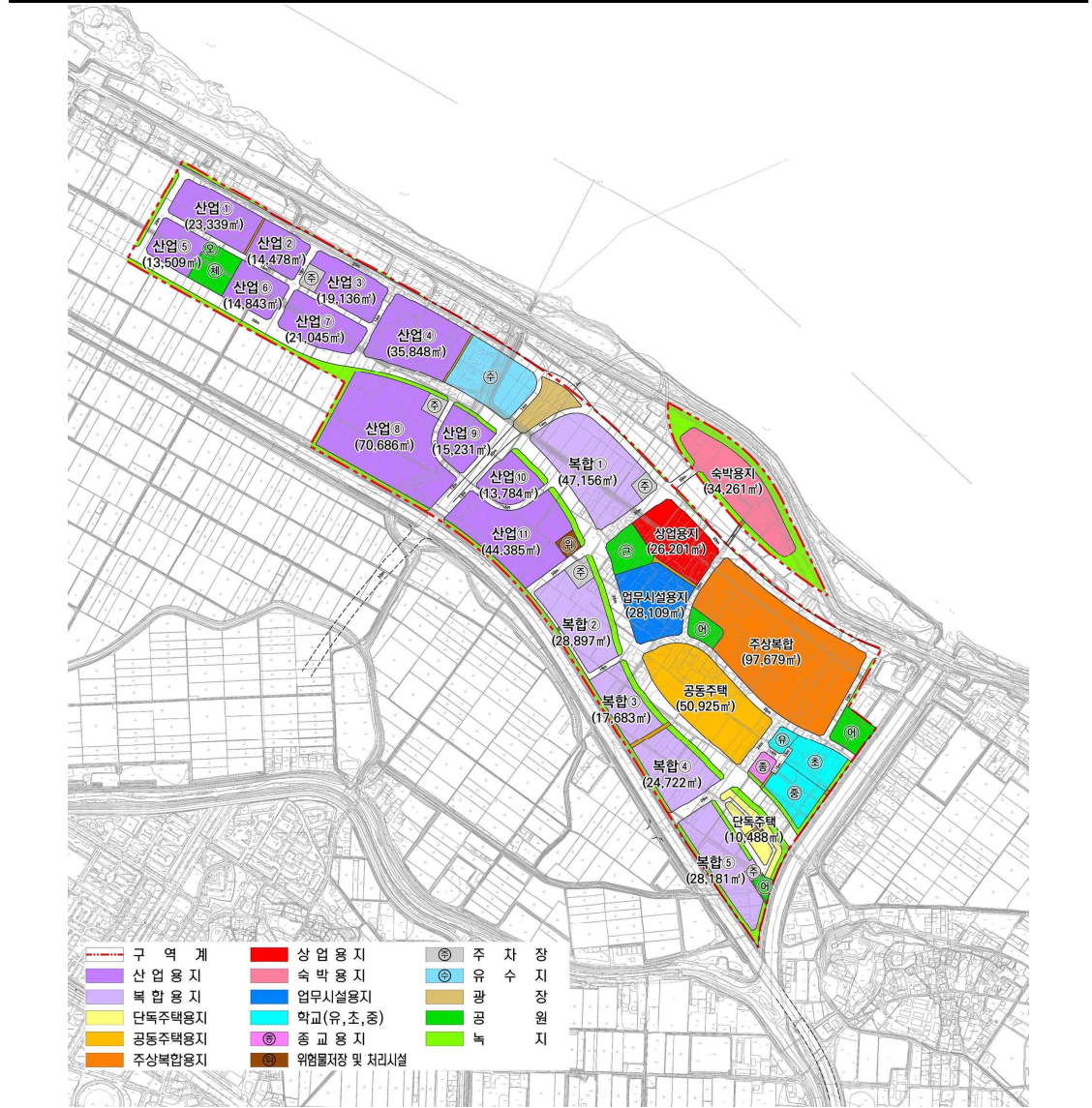
- 붙 임
1. 붙임도면 (1) : 위치도(변경없음)
  2. 붙임도면 (2) : 개발계획도(변경)
  3. 붙임도면 (3) :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도(변경)



【붙임도면 2 : 개발계획도】(변경)

【기정】

< 토지이용계획도 >





【변경】

< 토지이용계획도 >



【붙임도면 3 :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도】(변경)

【기정】

< 업종배치계획도 >



【변경】

< 업종배치 계획도 >

